

■ 발간등록번호 11-1150000-000182-01

청소년보호 2003-33

제5차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분석보고서

2003. 12.

글루
충리 청소년보호위원회

분석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김애령(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원미혜(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 분석보고서는 제5차 신상공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교육실시,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개집행자와의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통계의 경우 중복기입을 허용하여 일부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각주 등으로 별도 설명을 붙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제5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3
분석 내용 요약	5
들어가는 말	13
A.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 공개 심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15
B. 공개 대상 성범죄의 범죄 유형별 특성 및 청소년의 피해 상황	28
I. 성매수	29
1. 범죄자 관련 사항	29
2. 성매수 범행관련 사항	32
3. 피해 청소년 관련 사항	39
II. 성매수 알선	44
1. 범죄자 관련 사항	44
2. 범행 관련 사항	46
3. 업소 관련 사항	47
4.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 관련 사항	50
III. 강제추행	54
1. 청소년 강제추행 범죄자 관련 사항	54
2. 범행 관련 사항	56
3.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 관련 사항	62
IV. 강간	68
1. 강간 범죄자 관련 사항	68
2. 강간 범행 관련 사항	71

3. 강간 피해 청소년 관련 사항	78
제4차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고서 85	
1. 범죄유형별 특징	87
2. 범죄유형별 사건의 특성	101
3. 피해청소년의 특성	109

제5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분석 내용 요약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일반 특성

제5차 신상 공개 심사의 대상이 된 1225건 중에서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는 모두 661건(53.9%)이다. 공개 대상자 중 성매수 111건(전체 심사 대상 1,225건 중 9.1%)은 교육 대상으로 분류된다.

전체 1,225건 중에서 성매수는 58.5%, 알선은 6.3%, 추행은 19.5%, 강간은 15.7%이다. 이 중 공개 대상이 된 성매수 범죄는 전체의 17.9%인 221건(교육 대상 111건 포함)이며, 성매수 알선이 75건(6.2%), 강제 추행이 195건(15.8%) 그리고 강간이 168건(14.0%)를 차지한다. 공개 대상자 전체 661건 중에서 성매수 범죄는 33.3%이고, 성매수 알선이 11.5%, 강제 추행이 29.3%, 그리고 강간이 25.9%이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성별은 전체의 96.8%가 남성이다. 범죄자가 여성인 39건(공개 37건, 비공개 2건)은 모두 성매수 알선 범죄에 해당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모든 연령대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2, 30대가 가장 많다. 범죄 유형별로 연령 분포를 보면, 강간과 성매수 범죄자는 20대가 각각 40.9%, 44.1%로 가장 많다. 성매수 알선 범죄는 30대가 55.1%로 가장 많으며, 강제 추행 범죄는 40대(31.5%)가 가장 많다. 각 연령별로 10대는 다른 범죄에 비해 강간 범죄가, 60대는 강제 추행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98.4%는 여자 청소년들이다. 남자 피해 청소년들은 성매수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제추행 피해자들이다. 한 범죄자에 의해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17.9%이다. 피해 청소년의 연령을 보면, 12세 이하의 청소년이 전체의 18.6%를 차지한다. 피해 청소년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연령대는 15세로 전체의 21.8%이며, 16세는 전체의 20.3%이다. 12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95%가 공개된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12세 이하는 추행, 강간 범죄의 피해가 가장 많고, 15-16세는 성매수 피해가 가장 많으며, 17-18세는 성매수 알선 피해가 가장 많다.

성매수는 범죄의 71.6%가 여관에서 일어나지만,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범죄는 피

해자의 집에서, 또는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경우¹⁾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강간이 피해자의 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22.0%를 차지하며, 친부·의부·친척 등에 의한 강간도 14.6%나 된다. 추행 또한 피해자의 집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16.4%이며,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8.0%이다.

전체 범죄자 1225명 중 57.7%를 차지하는 707명(비공개 포함)은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난다. 범죄 전력이 있는 범죄자 707명 중 13.2%인 93명은 이미 성 관련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전체 신상 공개 심사 대상 1225명의 7.6%에 해당한다. 공개자 661명 중 범죄 전력을 보면, 각 범죄 유형별로 동종 범죄의 재범율이 높게 나타난다. 공개된 성매수 알선범의 동종범죄 재범율은 9.5%로 가장 높다. 성매수 재범율은 4.8%, 강제 추행 재범율은 7.8%, 강간 재범율은 7.3%이다.

2. 범죄 유형별 특성 요약

2-1. 성매수와 성매수 알선

성매수

성매수 범죄자 중 69.3%인 496명은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다. 30.7%인 221명 중 110명은 공개되며, 111명은 교육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성매수 범죄자의 특징

성매수 범죄자는 2, 30대가 전체의 78.8%를 차지한다. 30대가 43.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0대로 전체의 35.8%이다. 다른 성범죄 유형과 비교해 보면,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성매수 범죄자의 비율은 가장 낮다(59.5%). 이들 중 동종범 죄인 성매수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는 범죄자는 17명(4.8%)이다. 또한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3.6%이다.

성매수 범죄의 특징

공개 대상 성매수 범죄의 93.4%는 개인형 성매매이고, 업소형은 6.6%에 불과하다. 범죄자 1인 당 피해 청소년의 수가 1명인 경우는 전체의 48.7%이며, 피해 청소년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도 51.3%나 된다. 성매수 범행 경로는 인터넷과 전화방이 가장 많다(52.3%, 17.5%). 그 외에는 이동통신, 아는 사람의 소개, 업소의 알선, 거

1)외부자의 침입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범행이 벌어지는 경우는 피해자의 으로, 가족 또는 친척 등에 의해 가정 내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는 가으로 분류한다.

리 헌팅, 유인 등이 있다. 성매수가 2회 이상 지속된 경우는 전체의 42.6%이며, 이 중 4회 이상 지속된 경우는 11.2%이다. 청소년들은 생활 상의 필요와 경제적 욕구로 인해 성매수에 응하게 되지만, 5만원 미만의 적은 대가를 받거나, 숙식 제공 및 기타 사례를 받는 경우, 또는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전체의 30.1%이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범죄자들 중 대부분인 83.6%는 상대가 청소년인지를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짐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매수 피해 청소년의 특징

성매수 대상 청소년들은 거의 전부가 여자 청소년들이지만, 성인 남성에 의한 남자 청소년의 성매수도 1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청소년의 나이는 15세에서 17세 사이가 가장 많다(66.3%). 그러나 12세 이하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도 전체의 5.0%이다. 성매수 피해 청소년 중 45.7%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머지 54.3% 중에서 졸업 또는 학업 중단 이후 무직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 38.7%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8.1%이다. 피해자 진술서 상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성매수 대상 청소년은 가출 상태에 있는 경우보다 (35.0%), 가출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가(40.6%) 더 많다.

성매수 대상 청소년들은 성매매 시 다른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하고, 다른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지만, 성매수 시 약속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31.0%나 된다. 또한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협박이나 스토킹을 당하기도 하며, 성매수 대가를 절도, 갈취 당하기도 한다. 성매매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된 경우도 1.4%이다.

성매수 알선

성매수 알선 범죄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건수는 심사 대상 전체 77건의 97.4%인 75건이다. 이는 전체 신상 공개 범죄(661건)의 11.4%이다.

성매수 알선 범죄자의 특징

성매수 알선 범죄자들은 다른 범죄에 비해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다(84.2%). 이들 중에는 동종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9.5%이며, 업소 관련 범죄 전과(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18.5%이다. 성매수 알선 범죄는 업주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85.5%)

범행 특징 및 업소 관련 사항

성매수 알선 업소의 유형은 단란주점과 티켓다방이 가장 많은데, 각각 42.5%이다.

업주들은 소개소(6.9%) 또는 유통업소 관련자의 소개(30.3%)나 고용 청소년의 소개(22.7%)를 통해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이 직접 취업하는 경우도 13.8%이다.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청소년의 수가 2, 3명인 경우가 전체의 61.9%이며, 4명 이상의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도 전체의 9.2%이다. 업주들은 대부분(85.0%) 피해자가 청소년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업소에 고용되면서 하루 13시간 이상의 장시간을 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성매매를 강요 당하는데, 암묵적인 압박과 불이익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가 64.6%이고,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 강요하는 경우가 35.4%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업소에서 강간(5건)이나 추행(7건)과 같은 다른 성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감금(9건)을 당하거나 협박, 폭행(6건)을 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성매매 대가와 급여를 갈취 당한 경우도 38건 드러난다.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의 특징

업소에 고용된 피해 청소년들의 72.4%는 16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다. 이들의 74.5%는 가출한 상태이다. 피해 청소년들이 당 업소에서 일한 기간은 15일에서 1개월 사이가 26.2%, 1개월에서 3개월 사이가 30.3%이다. 이들 중 처음 업소에서 일을 하게 된 경우는 39.4%(진술서 상에 나타난 71건 중 2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60.6%(진술서 상에 나타난 71건 중 43건)는 다른 업소에서 당 업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다방에서 다방으로, 또는 다방에서 주점, 주점에서 주점으로 업소를 바꾸어 이동한다. 청소년들은 고액의 수입을 약속 받고 업소에 고용되지만, 오히려 임금과 성매매 대가를 갈취당하고 성폭력 등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빚(30건)과 벌금(34건), 장시간의 노동 등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2-2. 강제추행과 강간

강제추행

신상 공개 대상이 된 강제 추행 범죄는 모두 195건으로 전체 심사 대상 239건의 82.0%이다. 강제 추행은 특히 12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그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며,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남자 청소년이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강제추행 범죄자의 특징

강제 추행 범죄자의 나이는 2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다

른 범죄에 비해 5, 60대의 범죄자들이 많은 편이다(23.1%). 특히 60대 이상의 범죄자도 9.2%에 이른다. 추행범죄자도 동종범죄의 재범율이 높은 편(7.8%)이다.

강제추행 범죄의 특징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이 94.1%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남자 청소년이 피해를 당한 경우 16건(5.9%)도 포함되어 있다. 범죄자 일인 당 피해 청소년의 수를 보면, 피해 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도 21.0%이다. 강제 추행 범행 장소는 가해자의 집(19.9%)과 피해자의 집(16.7%)이 가장 많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강제 추행이 범해진 경우도 8.0%에 달한다. 강제 추행의 범행 수단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보다는 위계나 위력(74.4%)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강제추행은 12세 이하의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전체 피해 청소년의 70.6%나 되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은 범행에 따라 그 추행 정도의 편차가 크다. 단순한 접촉으로 추행을 한 경우나 추행 미수에 그친 경우도 18.1%이지만, 성기 접촉, 성기 애무를 강요하거나(62.4%) 유사 성행위를 행한 경우(8.1%)도 70.5%에 이른다. 피해 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이나 다른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항문성교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4.4%) 등도 발견된다.

추행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53.3%이지만, 아는 사람에 의한 추행도 46.7%에 이른다. 동네 사람 등에 의한 추행은 전체의 28.7%이고, 친부·의부·친척 또는 어머니의 애인(동거인) 등에 의해 가정 내에서 추행이 범해지는 경우도 전체의 11.6%에 이른다. 아는 사람 또는 가족 및 친족 관계에서의 성추행의 심각성은 범죄가 반복, 지속된다는 점이다. 강제 추행이 반복, 지속되는 경우를 보면,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는 5회를 넘지 않는 반면, 동네 사람에 의한 경우는 수십 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친부·의부·친척 등에 의한 강제 추행은 더욱 고질적이어서, 수년에 걸쳐 수백 회에 이르기까지 반복,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강제 추행으로 인해 성기 상처(17건)나 구타(8건), 흉기(2건)로 인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범행 이후 협박, 공갈(6건), 스토킹(8건), 성관계 요구(2건), 폭행(9건) 등의 2차 폭력에 노출되기도 한다.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의 특징

강제 추행은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다. 12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전체의 70.6%에 이른다. 그 중에는 6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이 25.4%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행 피해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미취학 아동이거나 학생이며(92.5%), 가출하지 않은 상태(88.1%)에 있다.²⁾ 강

2) 이것은 가출 청소년들이 추행을 당하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의 반증이기도 하다. 가출 청소년들은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추행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추행 범죄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그것을 신고, 고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잊고, 해소해 버리려고 노력하게 된다.

제추행은 다른 유형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는 달리 청소년의 성별과 무관하게, 어느 공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나 상존하는 위협이다. 강제추행 범행이 있고 나서 사건 직후에 신고한 경우는 51.5%이며, 추후에 신고한 경우는 30.9%이다. 사건 직후 신고한 비율이 강간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피해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려 부모나 현장 목격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으나 추후에 신고한 경위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은 나중에 부모가 알게 되어 신고하게 된 경우(40건)이다. 강제추행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외상을 남긴다. 그러나 피해자 참고인 진술서에서 범행 이후의 상태에 대해 물은 경우는 전체의 24.3%에 불과하다. 진술서 상에 나타난 경우에서 보면, 피해 청소년들은 범행 피해 이후 신체적 외상, 심리적 불안, 대인 기피, 심리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심리적 외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강간

심사 대상이 된 강간 범죄 192건 중 170건(89.0%)은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다.

강간 범죄자의 특징

신상 공개되는 170건의 강간 범죄 중에는 20대에 의한 강간(43.5%)이 가장 많다. 강간 범죄자의 직업을 보면 31.2%가 무직자이다. 이는 전체 신상공개 성범죄자 중 무직자의 비율이 14.4%인 것에 비해 두 배가 넘는 비율이다. 또한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3.5%), 군경, 공익근무 요원(3.5%)의 비율이 높다. 강간 범죄자들 중 7.3%는 동종범죄인 성폭력 범죄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강간 범죄의 특징

강간 범죄의 25.1%는 강도 강간(6.3%), 윤간(9.6%), 강도 윤간(9.2%)이다. 동일한 범죄자에 의한 강간 피해 청소년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도 15.3%에 달한다. 이 중에는 4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피해를 당한 경우도 6건(3.6%) 포함되어 있다.

강간 범행 장소로 가장 많은 것은 피해자의 집(36.8%)이다. 외부의 침입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강간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범죄자와 피해자가 한 가정 안에 머무는 친부·의부·친척 등에 의한 강간도 15.3%나 된다. 그 밖에 가장 많은 범행 장소는 자동차 안(23.4%)인데, 이는 피해 청소년을 납치, 유인하여,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이동하면서 강간 또는 윤간을 범한 경우이다.

강간 범죄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전체의 54.4%이다. 그러나 45.6%는 모두 청소년의 가정 내에서,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터나 놀이 공간 내에서 알던 사람에 의해 범해지는 경우이다. 특히 친부에 의한 경우가 6.6%, 의부(어머니의 동거인, 애인 등 포함)에 의한 경우가 6.1%, 그리고 그 밖의 가족 관계(친조부, 의붓오빠, 형부, 법률상 외삼촌 등) 내에서 범해진 경우가 2.6%에 달한다. 추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간이 반복, 지속되는 경우는 청소년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범죄자에 의한 것이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지속되는 경우는 그 수도 적고 지속 횟수가 5회를 넘기지 않는 반면, 수십, 수백 회 반복, 지속되는 경우는 청소년의 가정 내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강간이 수년간 수백 회 범해진 경우를 보면, 친부에 의한 경우가 4건, 의부에 의한 경우가 6건, 친척에 의한 경우가 1건이다.

강간 범행 시 피해 청소년은 성기에 상처를 입거나(35건), 물리적 폭력에 의해 신체적 상처(68건)를 입는다. 또한 빈번하게 범죄자에 의해 정신적·심리적 모욕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61건). 강간 장면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어, 피해 청소년을 협박한 경우도 9건이나 발견되며, 강간으로 인해 성병에 감염되거나 임신을 한 경우도 있다. 또한 청소년은 범행 이후 범죄자의 2차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강간 이후 오히려 협박과 공갈을 당하는 경우가 44건이며, 폭행을 당한 경우도 11건이다. 또한 강간 이후 금품을 요구하거나(3건) 성매매를 요구한 경우(1건), 스토킹한 경우(4건), 인신매매를 시도하다가 미수한 경우도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각각 그 범죄 유형에 따라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각각의 범죄 유형들이 넘나드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강간 범죄에 있어서도 다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성매수를 빙자하여 청소년을 유인, 강간한 경우가 19건이나 된다. 또한 강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추행과 더불어 강간을 범한 경우도 27건에 이른다.

강간피해 청소년의 특징

강간 피해 청소년 중 12세 이하는 전체 피해 청소년의 24.8%에 이른다. 여기에는 9세 이하의 아동도 9.4%(이 중 6세 이하 3.3%)가 포함된다. 강간 피해가 가장 많은 나이는 16세(17.8%)이고, 15세와 17세가 각각 16.8%, 15.4%이다.

추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매수 범죄와는 달리 강간 피해 청소년 중 재학생의 비율은 70.6%에 달하며, 가출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63.9%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드러낸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강간,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단순히 학업 중단 집단 및 가출 집단과 같은 '위험 집단'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가정이나 학교 공간 안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예외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둘째, 가출 청소년 집단의 경우 강간, 성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를 당하게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이나 보호자, 신뢰 집단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가출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를 드러내거나 문제 삼을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강간 범죄에 대해 사건 직후에 신고한 경우는 36.0%인 76건이다 사건 직후에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에 신고한 경우가 37.4%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4.7%이다. 강간 피해 청소년이 범죄 신고를 꺼린 이유는 부모님이나 주변에 강간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원하지 않아서, 또는 범죄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강간 사건 직후에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에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나중에 부모가 알게 되어 신고한 경우가 26건(32.9%),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이 신고하거나 (7건, 8.9%) 신고를 권유하여(9건, 11.4%) 신고한 경우가 16건이다. 그리고 범죄자가 범행을 반복, 지속해서 신고한 경우도 7건에 이른다.

들어가는 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위협이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대의 몸과 성을 대상화하여 육체적, 심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성범죄로써, 상황에 대한 통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이다. 그것은 단순히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청소년들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청소년들의 안전과 자기 보호의 권리,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이다. 성범죄의 위기적 경험은 청소년의 미래와 전망을 위협한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성적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많은 청소년들은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만연한 남성중심적 성문화는 남성의 성욕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남성중심적 성문화의 일반적 통념은 성을 사는 행위를 관용하고, 그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라도 크게 문제시 하지 않는다. 반면 성범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피해자로 보호되기 이전에, 성범죄의 피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인한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나아가 성범죄 가해자의 2차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해결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은, 한국 사회의 남성중심적 성문화의 한 표현이며, 실질적 권력 행사의 한 양상이기도 하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로써의 특수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로써의 특수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어, 처벌되기 어려운 범죄이다. 성범죄는 두 당사자 만이 증인이 되는 은폐된 범죄라는 점에서 드러나기 어렵다. 더구나 그 피해 당사자가 사회적으로 무력한 청소년일 때, 범죄 사실은 감추어지고 묻혀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가시화된 범죄 자료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폭력 범죄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분석의 자료는 제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심사 대상이 된, 2000년 7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에 발생하고, 2001년 1월에서 2002년 12월 사이에 판결을 받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자료 (판결문, 검찰과 경찰에서의 신문조서, 피해자 참고인 진술서 등) 1,225건이다. 본 분석은 우선 신상공개 대상이 된 1,225건 전체를 가지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고(A.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 공개 심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성매수, 성매수 알선, 강제추행, 강간 등 각 성범죄의 유형에 따른 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을 신상 공개 대상자(661건, 교육 대상자 110건 포함)를 중심으로 분석한다(B. 공개 대상 성범죄의 범죄 유형별 특성

및 청소년의 피해 상황).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각 범죄들은 서로 연계되어 발생한다. 성매수로 유인하여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경우, 업소에서의 추행과 강간, 또는 추행, 강간 범죄이후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들이 분석 과정에서 빈번이 발견된다. 본 분석은 이러한 범죄들의 공통성과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다른 한편 범죄 유형에 따라 범죄 성격과 피해 상황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각 범죄는 그 유형에 따라, 범죄자의 특성과 범죄 양상이 다를 뿐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 집단의 특징이 각기 다르며,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범죄의 특징과 피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범죄 특성을 충분히 밝혀내는 분석이 요청된다. 본 분석에서는 각 범죄의 특성과 청소년의 피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범죄 유형별 통계화를 시도하며, 판결문, 신문 조서 등의 자료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참고인 진술서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A.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 공개 심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³⁾

제5차 신상 공개 심사의 대상이 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자료는 모두 1,225건이다. 이 자료들은 2000년 7월에서 2002년 12월 19일 사이에 일어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에서, 2001년 1월 17일에서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법원의 판결을 받은 범죄들에 해당한다.

공개	661	(53.9%)
비공개	564	(46.1%)
합계	1,225	(100.0%)

〈표 1〉 심사 대상 범죄자 중 신상공개 비율

심사 대상이 된 1,225건 중에서 심사 결과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는 모두 661건 (53.9%)이다.⁴⁾ 공개 대상자 중 성매수 111건(전체 심사 대상 1,225건 중 9.0%)은 교육 대상으로 분류된다. 교육 대상자는 범죄자 본인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성매매 예방 교육을 수락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재심사를 걸쳐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⁵⁾

1. 범죄유형

	성매수		알선		강제추행		강간		합계	
공개	221	(17.9%)	75	(6.2%)	195	(15.8%)	170	(14.0%)	661	(54.0%)
비공개	496	(40.5%)	2	(0.2%)	44	(3.6%)	22	(1.8%)	564	(46.0%)
합계	717	(58.4%)	77	(6.4%)	239	(19.4%)	192	(15.8%)	1,225	(100.0%)

〈표 3〉 범죄 유형

3) 일반특성에서는 신상 공개(교육 포함)와 비공개 범죄 자료를 모두를 분석한다. 이 분석의 대상은 판결을 받은 범죄의 내용이다. 이 분석에 제시된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4)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 2003년 7월 8일 개정 청소년보호위원회 예규 제 45호, 제9조의 3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은 전체의 26.1%이다. 위의 조항에 따르면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공개		비공개		합계	
제출	189	(15.4%)	131	(10.7%)	20	(26.1%)
미제출	472	(38.5%)	433	(35.4%)	95	(73.9%)
전체	661	(53.9%)	564	(46.1%)	1,225	(100.0%)

〈표 2〉 의견서 제출 여부

5)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 2003년 7월 8일 개정 청소년보호위원회 예규 제 45호, 제9조의 2

전체 1,225건 중에서 성매수 58.5%, 알선 6.3%, 추행 19.5%, 강간은 15.7%이다. 이 중 공개 및 교육 대상이 된 성매수 범죄는 전체의 18.0%인 221건이며, 공개되는 성매수 알선은 75건(6.1%), 강제 추행은 194건(15.8%) 그리고 강간은 170건(13.9%)이다.

	성매수		알선		추행		강간	
공개	221	(30.8%)	75	(97.4%)	195	(81.6%)	170	(88.5%)
비공개	496	(69.2%)	2	(2.6%)	44	(18.4%)	22	(11.6%)
합계	717	(100.0%)	77	(100.0%)	239	(100.0%)	192	(100.0%)

〈표 4〉 범죄 유형별 공개/비공개 비율

신상 공개가 결정된 성매수 범죄는 220건으로 전체 성매수 범죄 716건의 30.7%에 불과하다. 반면 알선 범죄는 전체 77건 중에서 97.4%인 75건이 공개 대상이다. 또한 강제 추행과 강간은 각각 81.5%(전체 239건 중에서 195건)와 88.6%(전체 192건 중에서 170건)이 공개 대상이다.

	성매수		알선		추행		강간		합계	
공개	221	(33.4%)	75	(11.3%)	195	(29.3%)	171	(25.7%)	661	(100.0%)
비공개	496	(87.9%)	2	(0.4%)	44	(7.8%)	22	(3.9%)	564	(100.0%)

〈표 5〉 신상공개 대상자 내 범죄 유형 비율

그러므로 전체적인 공개 대상자 661건 중에서 성매수 범죄는 33.4%이고, 성매수 알선이 11.3%, 강제 추행이 29.5% 그리고 강간이 25.7%를 차지한다. 반면 비공개는 87.9%가 성매수이다.

1 - 2. 형량별

형량	성매수		알선		추행		강간		합계	
벌금형	89	(40.3%)	1	(1.3%)	20	(10.3%)	0	(0.0%)	110	(16.6%)
집행유예	112	(50.7%)	64	(85.3%)	107	(54.9%)	54	(31.8%)	337	(51.0%)
실형	20	(9.0%)	10	(13.3%)	68	(34.8%)	116	(68.2%)	214	(32.4%)
합계	221	(100.0%)	75	(100.0%)	195	(100.0%)	170	(100.0%)	661	(100.0%)

〈표 5-- 1〉 신상공개 대상자 형량별 비율

*성매수 공개는 교육을 포함한 수임.(성매수 교육:벌금형 77/집행유예 33/실형 0/총 110)

전체 신상공개자의 선고형을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51.0%(337명)으로서 가장 많고, 다음은 실형으로서 32.4%(214명)으로 많다. 벌금형은 선고받은 사람은 11명으로 16.6%의 비율을 보인다.

2. 범죄자의 성별

	남		여		합계	
공개	624	(50.9%)	37	(3.0%)	661	(53.9%)
비공개	562	(45.9%)	2	(0.2%)	564	(46.1%)
합계	1186	(96.8%)	39	(3.2%)	1,225	(100.0%)

〈표 6〉 범죄자의 성별

신상 공개 심사 대상이 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성별은 전체의 96.8%가 남성이다. 범죄자가 여성인 39건(3.2%)은 모두 성매수 알선 범죄에 해당한다.

3. 범죄자의 나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공개	4	(0.6%)	202	(30.6%)	239	(36.1%)	148	(22.4%)	43	(6.5%)	25	(3.8%)	661	(100.0%)
비공개	34	(6.0%)	252	(44.7%)	199	(35.3%)	64	(11.4%)	8	(1.4%)	7	(1.2%)	564	(100.0%)

〈표 7〉 범죄자의 나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모든 연령대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2, 30대가 가장 많다. 공개자 중에서 20대는 30.6%, 30대는 36.1%이고, 비공개자 중에서는 20대가 44.7%, 30대가 35.3%이다. 10대에 의한 성범죄도 전체 1,225건 중 38건(6.6%)이지만, 공개 대상이 된 10대는 강간범 4명이다. 그리고 이들 10대는 모두 사건 당시 만 19세이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강간	20	(10.4%)	79	(41.2%)	49	(25.5%)	32	(16.7%)	7	(3.6%)	5	(2.6%)	192	(100.0%)
추행	3	(1.3%)	44	(18.4%)	63	(26.4%)	76	(31.7%)	31	(13.0%)	22	(9.2%)	239	(100.0%)
성매수	13	(1.8%)	316	(44.0%)	283	(39.5%)	87	(12.2%)	13	(1.8%)	5	(0.7%)	717	(100.0%)
알선	2	(2.6%)	15	(19.5%)	43	(55.8%)	17	(22.1%)	0	(0.0%)	0	(0.0%)	77	(100.0%)

〈표 8〉 범죄 유형별 연령 분포

범죄 유형별로 연령 분포를 보면, 강간과 성매수 범죄자는 20대가 각각 40.9%,

44.1%로 가장 많다. 성매수 알선 범죄는 30대가 55.1%로 가장 많으며, 강제 추행 범죄는 40대(31.5%)가 가장 많다. 강제추행은 범죄자가 10대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60대 이상의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8.4%를 차지한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강간	공	4	(2.4%)	74	(43.5%)	48	(28.2%)	32	(18.9%)	7	(4.1%)	5	(2.9%)	170 (100.0%)
	비	16	(72.7%)	5	(22.7%)	1	(4.6%)	0	(0.0%)	0	(0.0%)	0	(0.0%)	22 (100.0%)
추행	공	0	(0.0%)	34	(17.4%)	53	(27.2%)	63	(32.3%)	27	(13.9%)	18	(9.3%)	195 (100.0%)
	비	3	(6.8%)	10	(22.7%)	10	(22.7%)	13	(29.5%)	4	(9.1%)	4	(9.1%)	44 (100.0%)
성매수	공	0	(0.0%)	79	(35.8%)	95	(43.0%)	36	(16.2%)	9	(4.1%)	2	(0.9%)	221 (100.0%)
	비	13	(2.6%)	237	(47.8%)	188	(37.9%)	51	(10.3%)	4	(0.8%)	3	(0.6%)	496 (100.0%)
알선	공	0	(0.0%)	15	(20.0%)	43	(57.3%)	17	(22.7%)	0	(0.0%)	0	(0.0%)	75 (100.0%)
	비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표 9〉 범죄자의 나이에 따른 공개/비공개 비율

공개되는 범죄를 중심으로 보면, 강간은 20대가 가장 많고(43.3%), 강제 추행은 40대가 가장 많다(32.0%). 성매수와 성매수 알선은 30대가 가장 많다(각각 43.2%, 56.6%). 또한 공개에서 제외된 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강간 범죄자 중 공개에서 제외된 경우는 10대가 72.7%로 가장 많고, 비공개 성매수 범죄자 중에서 20대가 전체의 47.8%로 가장 많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강간	공	4	(20.0%)	74	(93.7%)	48	(98.0%)	32	(100.0%)	7	(100.0%)	5	(100.0%)
	비	16	(80.0%)	5	(6.3%)	1	(2.0%)	0	(0.0%)	0	(0.0%)	0	(0.0%)
	합계	20	(100.0%)	79	(100.0%)	49	(100.0%)	32	(100.0%)	7	(100.0%)	5	(100.0%)
추행	공	0	(0.0%)	34	(77.3%)	53	(84.1%)	63	(84.0%)	27	(87.1%)	18	(81.8%)
	비	3	(100.0%)	10	(22.7%)	10	(15.9%)	13	(16.0%)	4	(12.9%)	4	(18.2%)
	합계	3	(100.0%)	44	(100.0%)	63	(100.0%)	76	(100.0%)	31	(100.0%)	22	(100.0%)
성매수	공	0	(0.0%)	79	(25.0%)	95	(33.6%)	36	(41.4%)	9	(69.2%)	2	(40.0%)
	비	13	(100.0%)	237	(75.0%)	188	(66.4%)	51	(58.6%)	4	(30.8%)	3	(60.0%)
	합계	13	(100.0%)	316	(100.0%)	283	(100.0%)	87	(100.0%)	13	(100.0%)	5	(100.0%)
알선	공	0	(0.0%)	15	(100.0%)	43	(100.0%)	17	(100.0%)	0	(0.0%)	0	(0.0%)
	비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2	(100.0%)	15	(100.0%)	43	(100.0%)	17	(100.0%)	0	(0.0%)	0	(0.0%)

〈표 10〉 범죄유형 내 연령별 공개/비공개 비율

각 연령별로 10대는 다른 범죄에 비해 강간 범죄가, 60대는 강제 추행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난다. 10대의 경우 강제추행과, 성매수, 성매수 알선 등의 범죄는 공개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단지 강간 범죄만이 공개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범죄자의 거주지

서울	공개		비공개		합계	
	115	(9.4%)	145	(11.8%)	260	(21.2%)
인천	46	(3.8%)	70	(5.7%)	116	(9.5%)
부산	43	(3.5%)	45	(3.7%)	88	(7.2%)
대구	29	(2.4%)	27	(2.2%)	56	(4.6%)
광주	13	(1.0%)	6	(0.5%)	19	(1.5%)
울산	14	(1.1%)	16	(1.3%)	30	(2.4%)
대전	23	(1.9%)	5	(0.4%)	28	(2.3%)
경기도	130	(10.6%)	117	(9.6%)	247	(20.2%)
충청남도	22	(1.8%)	18	(1.5%)	40	(3.3%)
충청북도	32	(2.6%)	8	(0.7%)	40	(3.3%)
강원도	18	(1.5%)	16	(1.3%)	34	(2.8%)
전라남도	53	(4.3%)	30	(2.4%)	83	(6.7%)
전라북도	41	(3.3%)	17	(1.4%)	58	(4.7%)
경상남도	37	(3.0%)	24	(2.0%)	61	(5.0%)
경상북도	35	(2.9%)	19	(1.5%)	54	(4.4%)
제주도	10	(0.8%)	1	(0.1%)	11	(0.9%)
합계	661	(53.9%)	564	(46.1%)	1,225	100.0%

〈표 11〉 범죄자의 거주지역

범죄자의 거주지는 서울이 전체의 21.2%, 경기도가 20.2%를 차지한다. 서울, 경기 지역 외에는 인천, 부산 등의 대도시가 각기 9.5%, 7.2%이며, 그 외의 지방에서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6.7%, 5.0%이다. 이는 이 지역에서 청소년 대상 성 범죄가 더 빈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나 단속 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5. 범죄자의 직업

	공개		비공개		합계	
무직	176	(14.4%)	100	(8.1%)	276	(22.5%)
생산직	111	(9.1%)	67	(5.5%)	178	(14.5%)
서비스, 판매직	57	(4.7%)	43	(3.5%)	100	(8.2%)
자영업	144	(11.8%)	92	(7.5%)	236	(19.3%)
농축어업	13	(1.1%)	9	(0.7%)	22	(1.8%)
사무, 관리직	103	(8.4%)	177	(14.4%)	280	(22.9%)
전문직	12	(1.0%)	5	(0.4%)	17	(1.4%)
학생	19	(1.6%)	53	(4.3%)	72	(5.9%)
군·경·공익근무	9	(0.7%)	8	(0.7%)	17	(1.4%)
기타	17	(1.4%)	10	(0.8%)	27	(2.2%)
합계					1,225	100.0%

〈표 12〉 범죄자의 직업

전체 범죄자 중에서 무직은 22.5%이다. 10대와 60대 이상의 범죄자가 11.7% (“〈표 7〉 범죄자의 나이” 참조)인 것을 고려해 보면, 이는 많은 숫자가 아니다. 범죄자의 직업으로는 사무, 관리직이 22.9%로 가장 많고, 자영업 19.3%, 생산직이 14.5%이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5.9%인 72명은 학생이며, 그 외에 전문직이 1.4%, 군·경, 공익근무요원이 1.4%이다.

6. 피해 청소년⁶⁾의 성별

	여		남	
공개	897	(60.2%)	22	(1.5%)
비공개	573	(38.2%)	2	(0.1%)
합계	1,470	(98.4%)	24	(1.6%)
전체	1,494	(100.0%)		

〈표 13〉 피해 청소년의 성별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98.4%는 여자 청소년이다. 남자 피해 청소년은 성매수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이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

6)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동일 범죄자에 대해 피해 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성매수, 강간(윤간)의 경우) 동일 피해 청소년에 대해 다수의 범죄자가 연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성범죄의 일차적 피해자가 됨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것이 곧 남자 청소년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자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와 성매수 알선의 경우는 예외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법적·행정적 관심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 한 범죄자에 의해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수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공개	454	(37.1%)	160	(13.1%)	34	(2.8%)	15	(1.2%)
비공개	552	(45.1%)	9	(0.7%)	1	(0.1%)	0	(0.0%)
합계	1,006	(82.1%)	169	(13.8%)	35	(2.9%)	15	(1.2%)
전체	1,225	(100.0%)						

〈표 14〉 한 범죄자에 의해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수

* 4명: 8건(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선 각 2건), 5명: 3건(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각 1건), 6명: 2건(강간 2건), 7명: 1건(성매수 알선), 8명: 1건(강제추행 1건)

한 범죄자에 의해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17.9%인 219건이다. 여기에는 피해 청소년의 수가 4명 이상인 범죄 15건 포함되어 있다. 피해 청소년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중에서 공개되지 않은 범죄는 10건이다.

8. 피해 청소년의 연령

	공개		비공개		합계	
12세 이하	263	(17.7%)	15	(0.9%)	278	(18.6%)
13세	42	(2.8%)	44	(2.9%)	86	(5.8%)
14세	91	(6.2%)	84	(5.6%)	175	(11.7%)
15세	177	(11.8%)	149	(10.0%)	326	(21.8%)
16세	154	(10.3%)	149	(10.0%)	303	(20.3%)
17세	127	(8.6%)	101	(6.7%)	228	(15.3%)
18세	65	(4.4%)	33	(2.2%)	98	(6.6%)
전체	919	(61.5%)	575	(38.5%)	1,494	(100.0%)

〈표 15〉 피해 청소년의 연령

피해 청소년은 12세 이하가 전체의 18.6%이다. 피해 청소년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연령대는 15세로 전체의 21.8%이며, 16세는 전체의 20.3%이다.

	공개		비공개		합계	
12세 이하	263	(95.0%)	15	(5.0%)	278	(100.0%)
13세	42	(48.8%)	44	(51.2%)	86	(100.0%)
14세	91	(52.6%)	84	(47.4%)	175	(100.0%)
15세	177	(54.3%)	149	(45.7%)	326	(100.0%)
16세	154	(50.8%)	149	(49.2%)	303	(100.0%)
17세	127	(56.1%)	101	(43.9%)	228	(100.0%)
18세	65	(66.3%)	33	(33.7%)	98	(100.0%)

〈표 16〉 피해 청소년 연령별 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

12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95%가 공개된다.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된 성범죄는 반 정도가 공개에서 제외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공개		비공개	
12세 이하	264	(28.6%)	14	(2.4%)
13세	42	(4.6%)	44	(7.7%)
14세	92	(10.0%)	83	(14.5%)
15세	177	(19.2%)	149	(26.0%)
16세	154	(16.7%)	149	(26.0%)
17세	128	(13.9%)	100	(17.5%)
18세	65	(7.0%)	33	(5.8%)
합계	922	(100.0%)	572	(100.0%)

〈표 17〉 공개/비공개 대상 범죄 피해 청소년의 연령

공개된 범죄의 피해 청소년들의 나이를 보면, 12세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28.6%이다. 반면 공개에서 제외된 범죄의 피해 청소년들의 나이는 15-16세가 가장 많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12세 이하는 추행, 강간 범죄의 피해가 가장 많고, 15-16세는 성매수 피해가 가장 많으며, 17-18세는 성매수 알선 피해가 가장 많다.

9. 범죄 유형별 범행 장소

	강간		추행		성매수	
길 (대로,골목)	6	(2.4%)	42	(15.3%)	0	(0.0%)
사무실	1	(0.4%)	12	(4.4%)	16	(3.7%)
공원, 야산 등*	17	(6.7%)	46	(16.7%)	0	(0.0%)
유흥주점 등**	3	(1.2%)	3	(1.1%)	9	(2.1%)

여관	22	(8.7%)	4	(1.5%)	313	(71.6%)
피해자의 집	56	(22.0%)	45	(16.4%)	16	(3.7%)
가해자의 집	35	(13.8%)	55	(20.0%)	12	(2.7%)
가정	37	(14.6%)	22	(8.0%)	0	(0.0%)
제3자의 집	9	(3.5%)	5	(1.8%)	9	(2.1%)
자동차 안	60	(23.6%)	21	(7.6%)	58	(13.3%)
기타***	8	(3.1%)	20	(7.3%)	4	(0.9%)
합계	254	(100.0%)	275	(100.0%)	437	(100.0%)

〈표 18〉 범죄 유형 별 범행 장소

* 주행 장소: 학교 운동장, 놀이터, 화장실 등 포함

** 성매수 장소: 비디오방, 노래방 포함

*** 기타: 성매수 장소-건물화장실, 건물 입구 등 포함, 강간 장소- 공중화장실, 직장 지하실, 은행 복도,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아파트 지하실 등 포함, 주행 장소-아파트 내, 찜질방, 엘리베이터, 교실, PC방, 건물 옥상 등 포함

강간이나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집에서, 또는 가족 관계에 의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강간이 피해자의 집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전체의 22.0%이며, 친부·의부·친척 등에 의한 강간도 14.6%나 된다. 또한 거리에서 유인하여 자동차 안에서 강간 또는 윤간이 일어나는 경우도 23.6%이다. 추행 또한 피해자의 집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16.4%이며,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8.0%이다. 성매수는 여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71.6%로 가장 많다.

9-1. 범행시간

범행시간	성매수		알선		추행		강간		합계	
미상	5	(2.3%)	15	(20.0%)	9	(4.6%)	8	(4.7%)	37	(5.6%)
0 - 6시	44	(19.9%)	19	(25.3%)	32	(16.4%)	83	(48.8%)	178	(26.9%)
6 - 12시	12	(5.4%)	2	(2.7%)	20	(10.3%)	8	(4.7%)	42	(6.4%)
12 - 18시	53	(24.0%)	12	(16.0%)	94	(48.2%)	34	(20.0%)	193	(29.2%)
18 - 24시	107	(48.4%)	27	(36.0%)	40	(20.5%)	37	(21.8%)	211	(31.9%)
합계	221	(100.0%)	75	(100.0%)	195	(100.0%)	170	(100.0%)	661	(100.0%)

〈표 18 - 1〉 신상공개 대상자 범행시간

강체추행의 경우 오후시간 때 48.2%(94건), 강간은 심야시간 때 48.8%(83건),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은 48.4%(107건), 36.0%(27건)로 주로 밤시간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범죄자의 전과 유무

	공개		비공개		합계	
무	207	(16.9%)	311	(25.4%)	518	(42.3%)
유	454	(37.1%)	253	(20.6%)	707	(57.7%)
전체	661	(54.0%)	564	(46.0%)	1,225	(100.0%)

〈표 19〉 범죄자의 범죄 전력 유무

전체 범죄자 1,225명 중 57.7%를 차지하는 707명은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난다.

10-1. 성 관련 범죄 전력 유무

	공개		비공개		합계	
성범죄	89	(12.6%)	4	(0.6%)	93	(13.2%)
기타전과	365	(51.6%)	249	(35.2%)	614	(86.8%)
전체	454	(64.2%)	253	(35.8%)	707	(100.0%)

〈표 20〉 범죄자의 성 관련 범죄 전력 유무

범죄 전력이 있는 범죄자 707명 중 13.2%인 93명은 이미 성 관련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1,225명의 7.6%에 해당한다. 대다수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은 성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 관련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아래 “〈표 21〉 성관련 범죄 전력자 중 재범 비율” 참조)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합계	
강간전과	20	(21.5%)	16	(17.2%)	9	(9.7%)	4	(4.3%)	49	(52.7%)
추행전과	3	(3.2%)	7	(7.5%)	0	(0.0%)	0	(0.0%)	10	(10.8%)
성매수알선전과	0	(0.0%)	0	(0.0%)	1	(1.1%)	0	(0.0%)	1	(1.1%)
청소년성매수	0	(0.0%)	0	(0.0%)	13	(14.0%)	0	(0.0%)	13	(14.0%)
윤방법위반	0	(0.0%)	0	(0.0%)	6	(6.5%)	3	(3.2%)	9	(9.7%)
성폭력범죄	3	(3.2%)	4	(4.3%)	1	(1.1%)	0	(0.0%)	8	(8.6%)
청소년성보호법	0	(0.0%)	1	(1.1%)	0	(0.0%)	1	(1.1%)	2	(2.2%)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배포	0	(0.0%)	0	(0.0%)	1	(1.1%)	0	(0.0%)	1	(1.1%)
전체	26	(28.0%)	28	(30.1%)	31	(33.3%)	8	(8.6%)	93	(100.0%)

〈표 21〉 성 관련 범죄 전력자 중 재범 비율

강간 전과범은 성 관련 범죄 전과 경력자 93명 중 52.7%인 49명인데, 이들 중 20명 (40.8%)은 강간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16명(32.7%)은 강제 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추행 전과범 10명 중에서 7명을 추행을 재범했고, 3명은 강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10-2. 기타 범죄 전력 유무

	공개		비공개		합계	
1회	123	(20.0%)	119	(19.4%)	242	(39.4%)
2회	75	(12.2%)	43	(7.0%)	118	(19.2%)
3회	51	(8.3%)	32	(5.2%)	83	(13.5%)
4회 이상	116	(18.9%)	55	(9.0%)	171	(27.9%)
전체	365	(59.4%)	249	(40.6%)	614	(100.0%)

〈표 22〉 범죄자의 기타 범죄 전력 유무

신상공개 심사 대상이 된 청소년 성범죄자의 67.2%인 614명은 성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를 가지고 있다. 범죄 전력이 1회에 그치는 경우가 39.4%이지만, 4회 이상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도 27.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범죄자에 대한 처벌 관련 법령 및 조항

11-1. 강간 및 강제 추행의 경우

	강간			강제추행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성폭력특별법* 제12조	19	(9.8%)	2	(1.0%)	6	(2.5%)
성폭력특별법 제5조 제1항	6	(3.1%)	0	(0.0%)	14	(5.9%)
성폭력특별법 제5조 제2항	11	(5.7%)	2	(1.0%)	0	(0.0%)
성폭력특별법 제6조 제1항	21	(10.9%)	6	(3.2%)	0	(0.0%)
성폭력특별법 제6조 제2항	2	(1.0%)	0	(0.0%)	5	(2.1%)
성폭력특별법 제6조 제3항	0	(0.0%)	2	(1.0%)	0	(0.0%)
성폭력특별법 제7조 제1항	21	(10.9%)	0	(0.0%)	0	(0.0%)
성폭력특별법 제7조 제2항	2	(1.0%)	0	(0.0%)	13	(5.5%)
성폭력특별법 제7조 제3항	0	(0.0%)	0	(0.0%)	6	(2.5%)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2 제1항	10	(5.2%)	2	(1.0%)	0	(0.0%)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2 제2항	1	(0.5%)	0	(0.0%)	98	(41.2%)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2 제3항	1	(0.5%)	0	(0.0%)	3	(1.3%)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2 제4항	8	(4.2%)	0	(0.0%)	23	(9.7%)

성폭력특별법 제9조 제1항	28	(14.5%)	7	(3.7%)	3	(1.3%)	0	(0.0%)
성폭력특별법 제9조 제2항	5	(2.6%)	0	(0.0%)	2	(0.8%)	0	(0.0%)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23	(12.0%)	1	(0.5%)	0	(0.0%)	1	(0.4%)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0	(0.0%)	0	(0.0%)	14	(5.9%)	22	(9.2%)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3항	1	(0.5%)	0	(0.0%)	3	(1.3%)	1	(0.4%)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4항	5	(2.6%)	0	(0.0%)	4	(1.7%)	0	(0.0%)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5항	7	(3.6%)	0	(0.0%)	0	(0.0%)	0	(0.0%)
합계	171	(88.6%)	22	(11.4%)	194	(81.7%)	44	(18.3%)

〈표 23〉 강간, 추행 범죄의 관련 법령 및 조항

* 성폭력특별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간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제12조(특수강도강간 미수범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의해 처벌 받은 경우가 전체 강간 범죄의 10.8%(공개 9.8%, 비공개 1.0%)이다. 그리고 성폭력특별법 제6조 제1항(무기 등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는 강간의 죄를 범한 자)에 의한 경우가 14.1%(공개 10.9%, 비공개 3.2%)이며, 제7조 제1항(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강간의 죄를 범한 자)에 의한 경우가 10.9%(모두 공개), 그리고 제9조 1항(강간 상해, 치사)에 해당하는 범죄가 18.2%(공개 14.5%, 비공개 3.7%)이다. 공개 되는 강간 범죄에서, 친족에 의한 강간과 윤간, 특수 강도 강간 및 강간 상해가 전체의 46.1%에 달한다. 또한 강간범죄 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1항(여자 청소년에 대한 강간)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도 24건(공개 23건, 비공개 1건), 12.5%이다.

강제 추행의 경우 성폭력특별법 제5조 제1항(특수강도 강간 내지 준강간, 준강제 추행)에 의해 처벌 받은 경우가 전체의 9.3%(공개 5.9%, 비공개 3.4%)이다. 제7조 제2항(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강제추행의 죄)에 의한 경우는 전체의 5.9%(공개 5.5%, 비공개 0.4%)이다. 그리고 제8조 제2항(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제4항(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자)에 의해 처벌을 받은 경우가, 각각 44.1%(공개 41.2%, 비공개 2.9%)와 10.1%(공개 9.7%, 비공개 0.4%)이다. 추행 범죄의 54.2%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범죄임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추행 범죄의 15.2%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의해 처벌되었다.

11-2.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의 경우

	성매수		성매수알선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청소년성보호법 제5조	220 (30.7%)	496 (69.3%)	0 (0.0%)	0 (0.0%)
청소년성보호법 제6조 제1항	0 (0.0%)	0 (0.0%)	1 (1.3%)	0 (0.0%)
청소년성보호법 제6조 제1항 제1호	0 (0.0%)	0 (0.0%)	1 (1.3%)	0 (0.0%)
청소년성보호법 제6조 제1항 제3호	0 (0.0%)	0 (0.0%)	30 (39.5%)	1 (1.3%)
청소년성보호법 제6조 제1항 제4호	0 (0.0%)	0 (0.0%)	20 (26.3%)	0 (0.0%)
청소년성보호법 제6조 제2항	0 (0.0%)	0 (0.0%)	10 (13.2%)	1 (1.3%)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호	0 (0.0%)	0 (0.0%)	14 (18.4%)	0 (0.0%)
합계	220 (30.7%)	496 (69.3%)	76 (97.4%)	2 (2.6%)

〈표 24〉 성매수, 성매수 알선의 관련법령 및 조항

성매수 범죄는 모두 청소년성보호법 제5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의해 처벌 받는다. 그러나 이 중 30.7%만이 공개 된다. 반면 성매수 알선 범죄는 97.4%가 공개 된다. 알선 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6조 제1항 제3호(“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와 제4호(“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환수한 자”), 제6조 제2항(“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리고 제7조 제1항 제2호(“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등에 의해 처벌 받았다.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범죄에 대한 처벌은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B. 공개 대상 성범죄의 범죄 유형별 특성 및 청소년의 피해 상황⁷⁾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각 유형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무력한 집단인 청소년을 성적 도구로 대상화하고,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리고 범죄 상황에 대한 대응력 및 해결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성범죄는 또 다른 범죄 피해와 쉽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청소년 대상 성범죄들은 상호 연계되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강간이나 추행 이후에 청소년에서 성매수를 강요하거나, 역으로 성매수로 유인하여 강간하는 경우 등이 다수 발견된다.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강간과 강제 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각 범죄는 그 유형에 따라 범죄자의 특성 및 범행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낼 뿐 아니라, 그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 집단의 특성이 다르며 범죄로 인한 피해의 내용도 각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각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범죄 유형의 특성에 맞는 분석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해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일은, 청소년의 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성범죄 피해 회복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가 될 것이다.

본 분석은 제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 공개자의 범죄에 대한 판결문, 신문조서, 피해청소년의 참고인 조서를 조사, 분석하여 범죄자 관련 사항, 범행 관련 사항, 피해 청소년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7) 범죄 유형별 분석은 공개 대상자의 자료에 한정한다. 분석하는 자료는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를 중심으로 하며, 피해 청소년 관련 사항은 청소년의 참고인 진술 조서를 자료로 한다. 분석 조사지 작성에 있어서는 각 항목에 대해 진술서 상에 드러난 모든 사항을 중복 기입함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범죄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일반 특성 분석A.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 공개 신사 대상자의 일반 특)과는 통계 상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범죄 유형별 분석에서 범죄자의 직업은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피해 청소년의 수 등은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조서 상에 진술된 범행 건이 있으면 포함시켰다.

I. 성매수

성매수 범죄자 전체 717명 중 496명(69.2%)은 공개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221명(30.8%)은 공개된다. 공개 221명에는 111명(50.2%)의 교육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대상 분류자들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한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을 받는 경우, 이후 재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본 분석은 신상공개 또는 교육으로 분류된 자료(221건)를 중심으로, 성매수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피해 청소년들의 참고인 진술서를 통해 피해 청소년의 범죄 피해 전후의 상황을 파악한다.

경찰	21	(9.5%)
검찰	200	(90.5%)
합계	221	(100.0%)

〈표 25〉 성매수 범죄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자

1. 범죄자 관련 사항

1-1. 성매수 범죄자의 성별

남	221	(100.0%)
여	0	(0.0%)
합계	221	(100.0%)

〈표 26〉 성매수 범죄자의 성별

2-2. 성매수 범죄자의 나이

20대	79	(35.8%)
30대	95	(43.0%)
40대	36	(16.3%)
50대	9	(4.0%)
60대 이상	2	(0.9%)
합계	221	(100.0%)

〈표 27〉 성매수 범죄자의 나이

성매수 범죄자는 2, 30대가 전체의 78.8%를 차지한다. 30대가 43.0%고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0대로 전체의 35.9%이다. 그 외에 40대가 16.3%, 50대가 4.0% 그리고 60대가 0.9%이다.

1-3. 성매수 범죄자의 혼인 상태

기혼	35	(15.8%)
미혼	15	(6.8%)
이혼, 사별	10	(4.5%)
별거	4	(1.8%)
기타*	2	(0.9%)
알 수 없음	155	(70.2%)
합계	221	(100.0%)

〈표 28〉 성매수 범죄자의 혼인 상태

* 기타: 동거, 사실혼 관계 등

1-4. 성매수 범죄자의 직업

무직	37	(16.7%)
사무, 관리직	59	(26.7%)
자영업	42	(19.0%)
생산직	30	(13.6%)
서비스, 판매직	29	(13.1%)
농축어업	0	(0.0%)
전문직	15	(6.8%)
학생	6	(2.7%)
군, 경, 공익근무	1	(0.5%)
알 수 없음	2	(0.9%)
합계	221	(100.0%)

〈표 29〉 성매수 범죄자의 직업

성매수자들은 특정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모든 직업군에 고르게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 무직자는 16.7%에 불과하며, 사무, 관리직이 가장 많은 26.7%이다. 자영업이 19.0%, 생산직이 13.6%, 서비스·판매직이 13.1%이다. 학생도 2.7%이고 군·경, 공익근무요원도 0.5% 있다.

1-5. 성매수 범죄자의 범죄 전력 유무

무	89	(40.3%)
유	132	(59.7%)
합계	221	(100.0%)

〈표 30〉 성매수 범죄자의 범죄 전력

신상공개 대상 성매수 범죄자의 59.7%에 해당하는 132명은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여 보면,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의 비율은 성매수 범죄가 가장 낮다.⁸⁾ 이들 중에는 2번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 이들의 전과회수는 평균 2.7회이다.

동종범죄(성매수)	17	(4.8%)
성폭력(강간, 추행)	13	(3.7%)
절도	24	(6.8%)
강도	1	(0.3%)
폭행, 상해	75	(21.0%)
사기	18	(5.1%)
기타 형사범죄	24	(6.8%)
과실범죄	124	(35.0%)
기타*	59	(16.5%)
합계	355	(100.0%)

〈표 31〉 신상 공개 성매수 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경우, 전과의 범죄 유형

* 기타: 행정범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성매수 공개자의 4.8%인 17명은 이전에 이미 성매수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강간, 강제 추행)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3.7%나 된다. 51.4%는 과실범죄나 행정범죄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폭행, 상해 또는 사기, 기타 형사범죄, 절도 등도 각각 21.0%, 5.1%, 6.8%, 6.8%를 차지한다.

8) 성매수는 전체의 59.5%가 전과가 있지만, 알선은 전체의 84.2%가, 추행은 64.9%가, 강간은 78.9%가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다.

2. 성매수 범행관련 사항

2-1. 성매수 피해 청소년의 성별

여	334	(99.7%)
남	1	(0.3%)
합계	335	(100.0%)

〈표 32〉 성매수 피해 청소년의 성별

성매수 피해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 1명을 제외한 334명 모두가 여자 청소년이다. 남자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도 남성 매수자에 의한 것이다.

2-2. 성매수의 유형

개인형	313	(93.4%)
업소형	22	(6.6%)
합계	335	(100.0%)

〈표 33〉 성매수의 유형

공개 되는 성매수 범죄는 개인형 청소년 성매매가 전체의 93.4%를 차지하는 반면, 업소형 청소년 성매매는 6.6%에 불과하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검거가 개인형 청소년 성매매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2-3. 성매수 피해 청소년의 수

1명	107	(48.7%)
2명	102	(45.9%)
3명	4	(1.8%)
4명	2	(0.9%)
5명 이상	6	(2.7%)
합계	221	(100.0%)

〈표 34〉 성매수 피해 청소년의 수⁹⁾

9) 피해 청소년의 수는 일반 특성에서 보인 청소년의 수와 차이가 있다. 이는 일반 특성에서는 판결문에 나타난, 처벌을 받은 범죄에 한정한 것인 반면, 본 항에서는 신문 조서 상에 나타난 모든 피해 청소년의 수를 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개 또는 교육의 대상이 된 성매수 범죄자 1인에 의한 피해 청소년의 수가 1명인 경우는 전체의 48.7%이다. 그러나 피해 청소년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도 51.3%나 된다. 이 중 피해자가 2명인 경우가 45.9%, 3명 이상은 경우는 5.6%이다.

2-4. 성매수 범행 경로

인터넷	149	(51.9%)
전화방	50	(17.4%)
이동통신	5	(1.7%)
거리현팅	10	(3.5%)
아는 사람 소개	30	(10.5%)
업소알선 통해	22	(7.7%)
동네사람의 유인	6	(2.1%)
기타*	15	(5.2%)
합계	287	(100.0%)

〈표 35〉 성매수 범행 경로

종복 기입

* 기타: 과외선생과 학생, 자기 여관 투숙 청소년, 성매수 단속 중이던 경찰, 찻집 종업원과 손님, 협박 유인 등

청소년 성매수는 51.9%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화방이나 이동통신을 통해 성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각각 17.4%, 1.7%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는 사람의 소개(10.5%) 또는 업소의 알선을 통해(7.7%) 성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많으며, 거리 현팅(3.5%)이나 한 동네의 이웃이 유인(2.1%)을 통해, 성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과외 선생이 학생 을 성매수 한 경우, 자기 여관에 투숙한 청소년을 성매수 한 경우, 성매수 단속 중인 경찰이 청소년을 협박하여 성매수 한 경우, 손님이 찻집 종업원을 성매수 한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청소년 성매매가 일반화되고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이 청소년 성매수를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현실에서, 모든 여자 청소년들은 다양한 관계와 경로를 통해 성매수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성매수는 다른 성폭력 범죄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된 성매수 범죄 중에는, 가해자가 피해 청소년의 자취방에 들어가 협박으로 유인하여 성교를 한 뒤,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강간과 강제 추행 이후 부모 또는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성매수를 강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역으로 성매수로 유인하여 강간을 하는 경우도 있다(19건, “〈표 121〉 강간과 타범죄와의 관계” 참조). 이는 성매수가 성폭력 범죄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

음을 보여준다. 성매수는 통상 성인 남성과 청소년 개인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무력한 상황에 있는 피해 청소년들에게, 성매수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2-5. 성매수 범행 장소

여관	315	(56.1%)
범죄자의 집	133	(23.7%)
자동차 안	58	(10.3%)
피해자의 집	16	(2.9%)
사무실	16	(2.9%)
제3자의 집	9	(1.6%)
비디오, 노래방	9	(1.6%)
기타*	5	(0.9%)
합계	561	(100.0%)

〈표 36〉 성매수 범행 장소

종복 기입 (매회 성매수 시의 범행 장소)

* 기타: 건물 화장실, 건물 입구 등

성매수 범행 장소는 56.1%가 여관이다.¹⁰⁾ 그 밖에 범죄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23.7%, 자동차 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각각 10.3%, 2.9%이다. 피해자의 집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2.9%나 된다. 그 밖에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건물 화장실이나 건물 입구와 같은 공공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발견된다.

2-6. 공범 존재 여부

공범 없음	539	(96.1%)
공범 1명	19	(3.4%)
공범 2명	3	(0.5%)
공범 3명 이상	0	(0.0%)
합계	561	(100.0%)

〈표 37〉 공범 존재 여부

종복 기입 (각 개별 범행마다)

10) 일반 특성에서의 통계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일반 특성에서의 범행 장소는 범죄자를 중심으로 한 건으로 통계 처리된 것인 반면, 여기에서의 통계는 피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복수의 범행을 종복 처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2-7.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성매수 범죄의 지속성

1회	192	(57.4%)
2회	47	(13.8%)
3회	59	(17.7%)
4-9회	29	(8.7%)
10회 이상	8	(2.4%)
합계	335	(100.0%)

〈표 38〉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지속성

피해 청소년 기준

성매수 범죄는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57.4%이지만, 동일한 피해 청소년에 대해 성매수가 지속되는 경우도 전체의 42.6%나 된다. 이 중에서 동일한 피해 청소년에 대해 3회 이상의 지속적인 성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28.8%이며, 10회 이상으로 성매수가 지속되는 경우도 2.4% 포함된다.

2-8. 성매수 범죄 시 타 범죄의 발생

협박, 공갈	9	(1.5%)
기타*	6	(1.2%)
절도	5	(1.0%)
폭행	2	(0.4%)
없음	500	(95.9%)
합계	522	(100.0%)

〈표 39〉 성매수 범죄 시 타 범죄의 발생

중복 기입 (범죄자 1인에 의한 다수의 성매수)

* 기타: 위조유가증권행사(대가로 가짜 수표를 줌), 사기(변제 능력 없이 선불금을 받아 오게 하여 착복), 대마 관리법 위반, 상해(범행 후 찾아와 폭행), 뇌물 공여죄(경찰 겸거 시) 등

성매수 시 청소년들은 다른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 공개 및 교육 대상이 된 성매수 범죄의 4.1%는 성매수 시에 다른 범죄가 함께 일어난 경우이다. 피해 청소년들은 성매수 시에 폭행, 협박, 공갈, 절도, 사기 등의 타 범죄에 노출되기도 한다.

2-9. 성매수의 대가

1만원 미만	24	(3.6%)
1~4만원	103	(15.3%)
5~9만원	155	(23.2%)
10~14만원	186	(27.8%)
15~19만원	63	(9.3%)
20만원이상	64	(9.6%)
기타사례*	19	(2.8%)
숙식제공	11	(1.7%)
대가주지 않음	45	(6.7%)
합계	670	(100.0%)

〈표 40〉 성매수의 대가

중복 기입(범죄자 1인에 의한 다수의 성매수)

* 기타사례: 선물이나 PC방비용, 청소년의 여관숙박비, 식사비 등

청소년들은 생활 상의 필요와 경제적 욕구로 인해 성인 남성의 성매수에 응하게 된다. 그러나 5만원 미만의 적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는 대신 숙식을 제공받거나 기타 사례를 받는 경우, 또는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30.1%이다.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 관계를 강요하고, 피해 청소년을 속여 대가를 주지 않거나, 이미 제공한 대가를 다시 절도하는 경우도 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만원미만	0	(0.0%)	14	(6.1%)	4	(4.4%)	4	(14.3%)	0	(0.0%)
1~4만원	1	(0.7%)	14	(6.1%)	4	(4.4%)	5	(17.9%)	0	(0.0%)
5~9만원	15	(10.5%)	36	(15.7%)	36	(39.5%)	4	(14.3%)	9	(100.0%)
10~14만원	42	(29.3%)	86	(37.5%)	22	(24.2%)	5	(17.9%)	0	(0.0%)
15~19만원	24	(16.8%)	26	(11.4%)	13	(13.2%)	0	(0.0%)	0	(0.0%)
20만원이상	22	(15.4%)	26	(11.4%)	7	(7.7%)	9	(32.1%)	0	(0.0%)
기타사례	7	(4.9%)	7	(3.1%)	5	(5.5%)	0	(0.0%)	0	(0.0%)
숙식제공	5	(3.5%)	4	(1.7%)	1	(1.1%)	1	(3.5%)	0	(0.0%)
대가 안줌	27	(18.9%)	16	(7.0%)	0	(0.0%)	0	(0.0%)	0	(0.0%)
합계	143	(100.0%)	229	(100.0%)	92	(100.0%)	28	(100.0%)	9	(100.0%)

〈표 41〉 성매수 범죄자의 나이와 성매수 대가의 상관성

피해 청소년에게 대가를 주지 않는 경우는 범죄자가 20대인 경우가 가장 많다. (18.9%)

2-10. 성매수 시 성교 인원

1 대 1	510	(85.7%)
청소년 1인:성인 2인 이상	4	(0.7%)
청소년 2인 이상:성인 1인	75	(12.6%)
청소년 2인 이상:성인 2인 이상	6	(1.0%)
합계	595	(100.0%)

〈표 42〉 성매수 시 성교 인원

종복 기입(범죄자 1인에 의한 다수의 성매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에서 동시에 청소년 2인 이상과 함께 성교를 한 경우가 전체의 12.6%를 차지한다. 피해 청소년의 참고인 진술서를 보면, 이는 성매수자들의 특별한 요구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청소년들이 성매매 시의 두려움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생활 상의 필요나 경제적 욕구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되더라도, 낯선 성인 남성과의 만남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다른 범죄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는 대가를 받지 못할까봐, 친구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친구들끼리 성매매 장소까지 함께 동행을 하거나, 그 과정에 함께 하는 것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도 한다.

2-11. 성매수 시 성교 유형

성기성교	513	(78.0%)
구강성교	45	(6.9%)
항문성교	2	(0.3%)
기타요구	2	(0.3%)
알 수 없음	95	(14.5%)
합계	657	(100.0%)

〈표 43〉 성매수 시 성교 유형

종복 기입(범죄자 1인에 의한 다수의 성매수)

청소년 성매수 시 범죄자들이 구강 성교나 항문 성교 또는 기타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범죄인들의 진술 자료에 보면, 자신은 성기능 장애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거짓 진술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실제로 이 범죄자들이 청소년의 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성인 남성 성매수자들에게 청소년의 성과 몸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성적 대상이자, 성적 호기심과 자극을 위해 쉽게 살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낸다.

2-12. 성매수 시 콘돔 사용 여부

콘돔 사용	28	(4.5%)
질외사정	72	(11.6%)
질내사정	107	(17.3%)
알 수 없음	414	(66.6%)
합계	621	(100.0%)

〈표 44〉 성매수 시 콘돔 사용 여부

종복 기입(범죄자 1인에 의한 다수의 성매수)

성매수 범죄자의 신문조서 상에서 성매수 시 콘돔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많은 경우(66.6%) 발견되지 않는다. 성매매로 인해 피해 청소년이 성병 또는 임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콘돔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이 발견되는 경우(207건) 중에서도 콘돔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경우는 28건(질문이 발견되는 사건 중 13.5%) 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표 45〉 범죄자의 입장에서, 성매수 피해자가 청소년인지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참조)에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2-13. 범죄자의 입장에서 성매수 피해자가 청소년인지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알고 있음	220	(63.3%)
확실히 알진 못했지만 짐작	69	(19.9%)
청소년이 나이 속임	22	(6.4%)
알지 못함	33	(9.5%)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3	(0.9%)
합계	347	(100.0%)

〈표 45〉 범죄자의 입장에서, 성매수 피해자가 청소년인지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종복 기입(범죄자 1인에 의한 다수의 청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범죄자들 중 대부분인 83.2%는 상대가 청소년인지를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짐작했다고 진술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가

현행법 상 범법행위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매수 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상대 남성이 알게 될 경우, 불이익이나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터넷이나 전화방 등을 통해,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매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 청소년 관련 사항

3-1. 피해 청소년의 나이

12세 이하	17	(5.0%)
13세	17	(5.0%)
14세	48	(13.5%)
15세	82	(24.5%)
16세	75	(22.4%)
17세	65	(19.4%)
18세	31	(9.3%)
합계	335	(100.0%)

〈표 46〉 성매수 피해 청소년의 나이

성매수 피해 청소년의 나이는 15세에서 17세 사이가 전체의 66.3%이다. 그러나 12세 이하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도 전체의 5.0%이며, 1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전체의 23.5%이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세	4	(3.4%)	9	(6.2%)	3	(5.4%)	0	(0.0%)	1	(33.3%)
13세	6	(5.1%)	4	(2.7%)	4	(7.1%)	3	(25.0%)	0	(0.0%)
14세	25	(21.4%)	10	(6.9%)	10	(17.9%)	0	(0.0%)	2	(66.7%)
15세	26	(22.2%)	39	(26.9%)	16	(26.8%)	1	(8.3%)	0	(0.0%)
16세	27	(23.1%)	39	(26.9%)	8	(14.3%)	2	(16.7%)	0	(0.0%)
17세	18	(15.4%)	32	(22.1%)	12	(21.4%)	2	(16.7%)	0	(0.0%)
18세	11	(9.4%)	12	(8.3%)	4	(7.1%)	4	(33.3%)	0	(0.0%)
합계	117	(100.0%)	145	(100.0%)	57	(100.0%)	12	(100.0%)	3	(100.0%)

〈표 47〉 성매수 범죄자 나이와 피해 청소년 나이의 상관성

3-2. 피해 청소년의 학력

초등학교 재학	3	(0.9%)
중학교 재학	70	(20.7%)
중학교 중퇴	64	(19.2%)
중학교 졸업	9	(2.7%)
고등학교 재학	80	(24.0%)
고등학교 중퇴	33	(9.9%)
고등학교 졸업	3	(0.9%)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73	(21.7%)
합계	335	(100.0%)

〈표 48〉 피해 청소년의 학력

성매수 대상 청소년 중 20.7%는 중학생이며, 24.0%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중퇴한 경우가 각각 19.2%, 9.9%이고, 중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가 각각 2.7%, 0.9%이다.

3-3. 피해 청소년의 직업

학생	153	(45.7%)
휴학 중	2	(0.6%)
무직	129	(38.7%)
유통업소종업원	13	(3.9%)
아르바이트	14	(4.2%)
기타*	2	(0.6%)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22	(6.3%)
합계	335	(100.0%)

〈표 49〉 피해 청소년의 직업

* 선도보호시설에서 생활 중, 검정고시로 중·고 졸업 후 학원에서 대입 준비 중

성매수 피해 청소년들 중 45.7%는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머지 54.3% 중에서 졸업 또는 중퇴 이후 무직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 38.7%이며, 아르바이트나 유통업소의 종업원으로 있는 경우는 8.1%이다.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이 진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실업 청소년들의 지위에서 청소년 성매매는 손쉬운 돈벌이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 특히 개인형 청소년 성매매는 학교에서 이탈한 청소년 집단 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가정에 머물면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4. 성매매 시 청소년의 가출 여부

가출	117	(35.0%)
가출하지 않은 상태	136	(40.6%)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82	(24.4%)
합계	335	(100.0%)

〈표 50〉 성매매 시 청소년의 가출 여부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82건을 제외한 253건 중에서 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53.8%인 136건이다. 117건(46.2%)은 가출을 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기할 사항은 가출 청소년보다 비가출 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숙식과 생활비 해결이 절박한 가출 청소년들이 청소년 성매매의 일차적 가능 집단인 것이 사실이지만, 청소년 성매매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출 여부, 학업 중단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청소년들은 성매매 가능 집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5. 피해 청소년의 장애 여부

장애 여부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음	329	(98.2%)
신체장애	0	(0.0%)
정신장애	1	(0.3%)
지능이 낮음	5	(1.5%)
합계	335	(100.0%)

〈표 51〉 피해 청소년의 장애 여부

3-6. 성매매 시 청소년의 기타 피해 사항

약속 한만큼 대가를 못 받음	52	(17.9%)
대가 전혀 받지 못함	38	(13.1%)
협박, 위협	15	(5.1%)
폭언	8	(2.7%)
성매매 이후 스토킹	5	(1.7%)
임신	4	(1.4%)
기타*	11	(3.8%)
없음	155	(42.8%)
합계	291	(100.0%)

〈표 52〉 성매매 시 청소년의 기타 피해 사항

피해자 진술서 상에 질문이 있는 경우

* 기타: 경찰 사칭 성매매 강요, 마약 투약 강요, 대마초 권유,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성매매 대가 갈취, 인터넷에 나체사진 공개, 음부에 이물질(막대사탕) 삽입 등 포함

청소년들은 성매수 시에 다른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하고, 다른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경제적 이유에서 성매매를 하지만, 성매수 시 약속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31.0%나 된다. 폭언, 협박, 위협과 같은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7.8%), 성매매 이후 지속적인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경우(1.7%)도 있다. 또한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을하게 되는 경우(1.4%)도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대가를 절도, 갈취 당하거나, 마약 투약을 강요 당하기도 한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약속만큼 대가 못 받음	24 (21.2%)	21 (18.3%)	7 (15.2%)	0 (0.0%)	0 (0.0%)
대가 전혀 못 받음	26 (23.0%)	10 (8.7%)	0 (0.0%)	0 (0.0%)	0 (0.0%)
협박, 위협	4 (3.5%)	7 (6.1%)	2 (4.4%)	1 (8.3%)	1 (25.0%)
폭언	4 (3.5%)	3 (2.6%)	0 (0.0%)	0 (0.0%)	1 (25.0%)
절도	3 (2.7%)	0 (0.0%)	0 (0.0%)	0 (0.0%)	0 (0.0%)
성매매 후 스토킹	0 (0.0%)	4 (3.5%)	2 (4.4%)	1 (8.3%)	0 (0.0%)
임신	1 (0.9%)	3 (2.6%)	0 (0.0%)	0 (0.0%)	0 (0.0%)
기타	0 (0.0%)	8 (6.9%)	2 (4.4%)	1 (8.3%)	0 (0.0%)
피해 없음	51 (45.2%)	59 (51.3%)	33 (71.6%)	9 (75.1%)	2 (50.0%)
합계	113 (100.0%)	115 (100.0%)	46 (100.0%)	12 (100.0%)	4 (100.0%)

〈표 53〉 범죄자의 나이와 청소년 피해 사항의 상관성

범죄자가 20대인 경우 성매수 시 피해 청소년에게 대가를 전혀 주지 않거나(23%), 약속한 만큼 대가를 주지 않는 경우(21.2%)가 상대적으로 많다. 성매수 시 일어나는 협박, 위협, 성매수 이후의 스토킹 등은 범죄자 연령대와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난다.

3-7. 피해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인지를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알고 있음	236	(70.4%)
확실히 알진 못했지만 짐작	41	(12.2%)
청소년이 나이 속임	10	(3.0%)
알지 못함	4	(1.2%)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44	(13.2%)
합계	335	(100.0%)

〈표 54〉피해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인지를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성매수 대상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상대 성인 남성이

알거나, 짐작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일부 성매매 시 다른 피해를 피하기 위해 나 이를 속이는 경우(3.0%)도 있지만, 청소년들은 대부분 성매매 거래 시 성인 남성들이 '청소년'을 그 상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굳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3-8. 피해 청소년이 청소년 성매매로 이전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없다	59	(17.6%)
있다	16	(4.8%)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260	(77.6%)
합계	335	(100.0%)

〈표 55〉 피해 청소년이 청소년 성매매로 이전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성매수 대상 청소년이 청소년 성매매로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는 진술서 상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77.6%). 설령 진술 조사 시 이를 묻는다고 할지라도, 경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도 4.8%인 16명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경찰 조사 이후에도 다시금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3-9. 성매수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처벌을 원함	47	(14.0%)
처벌을 원하지 않음	6	(1.8%)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282	(84.2%)
합계	335	(100.0%)

〈표 56〉 성매수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II. 성매수 알선

성매수 알선 범죄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건수는 심사 대상 전체 77건의 97.4%인 75건이다. 성매수 알선은 유통업소, 업태 위반 업소와 무허가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 강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또한 일정한 장소에서 업소를 가지고 청소년을 직접 고용하여 성매수를 알선하는 경우 뿐 아니라, '보도방' 등과 같은 형태로 유통업소에 청소년들을 알선하는 경우도 있다.

본 분석에서는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된 성매수 알선 범죄 자료 76건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매수를 알선한 다양한 업태의 범죄 형태를 분석하고, 업소에서의 청소년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경찰	1	(2.6%)
검찰	74	(97.4%)
합계	75	(100.0%)

〈표 57〉 성매수 알선 범죄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자

1. 범죄자 관련 사항

1-1. 성매수 알선 범죄자의 성별

남	38	(50.7%)
여	37	(49.3%)
합계	75	(100.0%)

〈표 58〉 성매수 알선 범죄자의 성별

성매수 알선 범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유일하게 여성 범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다. 성매수 알선 범죄자 중 남성은 50.7%, 여성은 49.3%이다.

1-2. 성매수 알선 범죄자의 나이

20대	15	(20.0%)
30대	43	(57.3%)
40대	17	(22.7%)
50대	0	(0.0%)
60대 이상	0	(0.0%)
합계	75	(100.0%)

〈표 59〉 성매수 알선 범죄자의 나이

성매수 알선 범죄자는 57.3%가 30대이다. 그 외에 20대가 전체의 20.2%, 40대가 전체의 22.7%를 차지한다.

1-3. 성매수 알선 범죄자의 업소에서의 역할

사장(업주)	65	(86.6%)
관리자(웨이터, 마담)	8	(10.7%)
카맨/오토맨 등	0	(0.0%)
여관주인	0	(0.0%)
기타	2	(2.7%)
합계	75	(100.0%)

〈표 60〉 성매수 알선 범죄자의 업소에서의 역할

성매수 알선범들은 업소의 업주인 경우가 전체의 86.6%이다. 그 외에는 직접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 매개하는 업소의 관리자(웨이터나 마담 등)이 10.7%이다. 기타 사항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동거녀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1-4. 성매수 알선 범죄자의 범죄 전력 유무

무	11	(14.7%)
유	64	(85.3%)
합계	75	(100.0%)

〈표 61〉 성매수 알선 범죄자의 범죄 전력 유무

전체 대상자 중 알선 범죄자들은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다. 성매수 알선 범죄자의 85.3%는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범죄 전력이 있는 집단의 평균 범죄 전력은 평균 3.1회이다.

동종범죄(알선)	18	(9.6%)
업소관련범죄*	35	(18.6%)
성폭력	5	(2.7%)
절도	4	(2.1%)
강도	2	(1.1%)
폭행, 상해	49	(26.1%)
사기	13	(6.9%)
기타 형사범	13	(6.9%)
과실범죄	39	(20.7%)
기타**	10	(5.3%)
합계	188	(100.0%)

〈표 62〉 성매수 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경우, 전과의 범죄 유형

* 업소관련범죄: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전염병예방법, 직업안정법 등

** 기타: 기타 행정법 등

성매수 알선 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경우의 9.5%는 동종범죄인 성매수 알선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성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동종범죄 재범율을 나타내는 것이다.¹¹⁾ 그리고 업소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을 위반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18.6%나 된다. 그 외에도 폭행, 상해가 26.1%, 사기가 6.9%를 차지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2.7%이다.

2. 범행 관련 사항

2-1.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의 수 (고용된 청소년의 수)

1명	22	(29.3%)
2명	28	(7.3%)
3명	18	(24.0%)
4명	3	(4.0%)
5명 이상	4	(5.4%)
합계	75	(100.0%)

〈표 63〉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의 수¹²⁾

11) 공개 대상을 기준으로 동종범죄 재범율은 성매수가 4.8%, 성매수 알선이 9.5%, 강제 추행이 7.8% 그리고 강간이 7.3%이다.

12) 피해 청소년의 수는 일반 특성에서 보인 청소년의 수와 차이가 있다. 이는 일반 특성에서는 판결문에 나타난, 처벌을 받은 범죄에 한정한 것인 반면, 본 항에서는 신문 조서 상에 나타난 모든 피해 청소년의 수를 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각 성매수 알선 범죄자의 경우에 따라 고용된 청소년이 2, 3명인 경우가 전체의 61.3%를 차지한다. 그러나 4명 이상의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도 전체의 9.4%이다.

2-2. 청소년 고용 방법

인터넷	5	(3.5%)
소개소	10	(6.9%)
유흥업소관련자의 소개	44	(30.3%)
고용청소년 친구 등에 의한 소개	33	(22.7%)
청소년이 직접 취업	20	(13.8%)
보도방 통해 업소로 출장	8	(5.5%)
기타*	4	(2.8%)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21	(14.5%)
합계	145	(100.0%)

〈표 64〉 유흥 업소의 청소년 고용 방법

종복 기입

* 기타: 유인, 가출 청소년 유인, 동거녀에게 개인형 성매매 알선, 채팅을 통해 생활정보지 광고, 일던 사이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로는 소개소나 유흥업소 관련자의 소개를 통하는 경우가 각각 6.9%, 30.3%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미 고용되어 있는 청소년이 친구 등을 소개하는 경우나 청소년이 직접 돈 벌이를 위해 유흥업소를 찾는 경우도 각각 22.7%, 13.8%이다.

3. 업소 관련 사항

3-1. 업소 유형

사창가*	1	(1.4%)
단란주점	31	(42.5%)
티켓다방	31	(42.5%)
전화방	2	(2.7%)
보도방	5	(6.8%)
기타**	3	(1.4%)
합계	73	(100.0%)

〈표 65〉 업소 유형

한 업소에서 2인 이상의 범죄자가 있는 경우, 업소 형태가 아닌 개인적 알선이 있기 때문에 합계가 73건

* 사창가: 방석집

** 기타: 오비방(레스토랑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술을 팔면서 청소년의 접대행위 및 2차 병행), 화상 데이트방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의 유형으로 가장 많은 것은 단란주점(42.5%)과 티켓다방(42.5%)이다. 티켓 다방의 경우 업주는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 다방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 청소년의 고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성매매가 '티켓'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주들은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알선 및 강요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흥 주점의 청소년 고용이 불법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티켓다방과 연계하여 다방에 고용된 청소년을 단란주점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경우도 발견된다. 단란주점과 같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유흥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해 보도방과 같이 단속하기 어려운 알선자를 통해 청소년의 성매매를 매개하기도 한다.

3-2. 청소년이 성매매를 거부할 때, 알선자의 성매매 강요 방법

욕설, 폭언	12	(18.5%)
협박	10	(15.4%)
폭행	1	(1.5%)
불이익(암묵적 압박 등)	42	(64.6%)
합계	65	(100.0%)

〈표 66〉 청소년이 성매매를 거부할 때, 알선자의 성매매 강요 방법

진술서 상에 나타난 65건에서 보면 업소에 고용된 청소년이 '2차'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성매수 알선자들은 이를 강요하기 위해 욕설이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35.4%), 암묵적인 압박이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64.6%). 물리적이거나 직접적인 압박과 폭력이 아니더라도, 고용 관계 하에서 청소년들이 간과할 수 없는 암묵적인 강요와 위압적인 분위기, 벌금과 빚에 대한 압박 등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다.

3-3. 업소에서의 청소년의 노동 시간

8시간 미만	2	(2.7%)
9-12시간	7	(9.6%)
13-15시간	16	(21.9%)
15시간 이상	4	(5.5%)
알 수 없음	44	(60.3%)
합계	73	(100.0%)

〈표 67〉 업소에서의 청소년의 노동 시간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매일 13시간 이상의 장시간을 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4. 성매수 알선 범죄에서의 타 범죄의 발생

피해청소년 성폭행	5	(7.1%)
성추행	7	(10.0%)
협박, 폭행	6	(8.6%)
감금	9	(12.9%)
성매매 대가/급여갈취	38	(54.3%)
기타*	5	(7.1%)
합계	70	(100.0%)

〈표 68〉 성매수 알선 범죄에서의 타 범죄의 발생

중복 기입

* 기타: 부녀 매매 미수, 영리 목적 유인, 소개업자의 협박 등

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강요 당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신상공개 대상이 된 성매수 알선 범죄에서도 피해 청소년이 업주 등에 의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우가 (진술서 상에 나타난 70건 중) 각각 7.1%, 10.0%에 이른다. 이들은 또한 성매매 공간에서 감금을 당하기도 하고(12.9%), 인신 매매의 위협과 소개업자 및 업주의 협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공개 대상이 된 성매수 알선 범죄의 54.3%에서 청소년들은 성매매 대가나 업소에서의 급여를 갈취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5. 성매수 알선 피해자가 청소년인지를 알았는지 여부

알고 있음	123	(84.7%)
모름	16	(11.2%)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6	(4.1%)
합계	145	(100.0%)

〈표 69〉 성매수 알선 피해자가 청소년인지를 알았는지 여부

성매수 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작성

성매수 알선자들의 대부분은 여자 청소년들의 나이를 알면서(85.0%), 성매매를 알선, 강요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3-6. 티켓다방의 경우, 청소년 고용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는지 여부

있다	21	(28.4%)
없다	35	(47.3%)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18	(24.3%)
합계	74	(100.0%)

〈표 70〉 티켓다방의 경우, 청소년 고용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는지 여부

고용된 청소년을 중심으로 작성

업소형 성매매에 유입되는 청소년들이 일차적으로 고용되는 업태가 티켓다방이다. 다방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청소년의 고용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티켓다방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말한다.”¹³⁾ 티켓다방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티켓다방 단속을 통한 알선 범죄의 적발은 쉽지 않다. 업주들은 고용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온 사실을 감추면서, 청소년의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를 차치하고서라도, 보호자의 동의서가 없이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도 4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 관련 사항

4-1.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의 나이

12세 이하	1	(0.7%)
13세	1	(0.7%)
14세	2	(1.4%)
15세	20	(12.4%)
16세	30	(20.7%)
17세	56	(39.3%)
18세	35	(24.8%)
합계	145	(100.0%)

〈표 71〉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의 나이

13)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고용 티켓다방 근절방안 토론회 자료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의 84.8%는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다. 그러나 14세 이하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도 4건 있으며, 15세를 고용한 경우도 12.4%를 차지한다.

4-2.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의 가출 여부

가출	108	(74.5%)
가출하지 않은 상태	6	(4.1%)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31	(21.4%)
합계	145	(100.0%)

〈표 72〉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의 가출여부

업소형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들이 가출한 상태에서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업주나 소개소의 소개를 통해 다른 업소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표 85〉 청소년의 성매매 업소 이동 경로” 참고). 그러나 가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도 6건이다.

4-3.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이 청소년 성매매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없다	11	(7.6%)
있다	2	(1.4%)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132	(91.0%)
합계	147	100.0%

〈표 73〉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이 청소년 성매매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4-4.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이 당 업소에서 일한 기간

7일 미만	11	(7.6%)
7-15일	20	(13.8%)
15일-1개월	38	(26.2%)
1-3개월	44	(30.3%)
3-6개월	13	(9.0%)
6개월 이상	12	(8.3%)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7	(4.8%)
합계	145	(100.0%)

〈표 74〉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이 당 업소에서 일한 기간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이 지금의 업소에서 일한 기간은 1개월 미만이 전체의 47.6%이다. 그러나 1개월 이상 일한 경우도 47.6%나 된다.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한 업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업주나 소개소를 통해 다른 업소로 자주 이동한다.

4-5.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총 기간

7일 미만	5	(3.4%)
7-15일	5	(3.4%)
15일-1개월	1	(0.7%)
1-3개월	8	(5.5%)
3-6개월	4	(2.8%)
6개월-1년	10	(6.9%)
1년 이상	15	(10.3%)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97	(67.0%)
합계	145	(100.0%)

〈표 75〉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총 기간

청소년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총 기간에 대해서는, 경찰의 진술서 상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67.0%). 그러나 진술서 상에 드러난 경우(48건)에 한정하여 보면, 6개월 이상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청소년이 52.1%에 이른다. 이 중에는 1년 이상을 일한 경우도 15건(31.3%) 포함되어 있다.

4-6. 청소년의 성매매 업소 이동 경로

처음	28	(19.3%)
다방-다방	21	(14.5%)
다방-주점	9	(6.2%)
주점-다방	0	(0.0%)
주점-주점	4	(2.8%)
다방-보도방-주점	7	(4.8%)
기타*	2	(1.4%)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74	(51.0%)
합계	145	(100.0%)

〈표 76〉 청소년의 성매매 업소 이동 경로

* 기타: 다방-전화방 2건

참고인 진술서에 나타난 71건을 중심으로 보면, 그 중에서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의 19.3%에 해당하는 28명은 지금 일한 성매매 업소가 처음이라고 답한 반면, 28.3%에 해당하는 43명은 다른 업소에서 현 업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4-7. 알선자에 의한 청소년의 피해 사실

빚	30	(20.7%)
부당한 벌금	34	(23.4%)
매상 강요	21	(14.5%)
폭언, 폭행	17	(11.7%)
장부 속임	3	(2.1%)
감금	11	(7.6%)
기타*	0	(0.0%)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29	(20.0%)
합계	145	(100.0%)

〈표 77〉 알선자에 의한 청소년의 피해 사실

* 기타: 그만둔 후, 협박

청소년들은 고액의 수입을 약속 받고 업소에 고용되지만, 성매매를 강요 당하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피해에 노출될 뿐 아니라, 오히려 임금과 성매매 대가를 갈취당하고 성폭력 등의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표 68〉 성매수 알선 범죄에서의 타 범죄의 발생” 참조), 빚과 벌금으로 고통 당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진술서를 통해 드러난 청소년들의 피해 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은 빚(20.7%)과 부당한 벌금(23.4%)이다. 그 외에도 매상을 강요 당하거나(14.5%), 폭언, 폭행 등의 물리적인 폭력(11.7%)에 시달리기도 한다.

4-8. 성매수 알선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처벌을 원함	46	(31.7%)
처벌을 원하지 않음	3	(2.1%)
잘 모르겠다	2	(1.4%)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94	(64.8%)
합계	145	(100.0%)

〈표 78〉 성매수 알선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III. 강제추행

심사 대상이 된 청소년 강제 추행 범죄 239건 중에서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범죄는 모두 195건으로 81.6%이다. 강제추행은 특히 12세 이하의 어린 청소년들이 그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며, 다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는 달리 남자 청소년들의 피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이 195건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청소년 강제 추행 범죄의 특징을 분석하고, 피해 청소년들의 특성과 범죄 피해 이후의 상황에 대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

경찰	8	(4.0%)
검찰	190	(96.0%)
합계	198	(100.0%)

〈표 79〉 청소년 강제 추행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자

경, 검찰 모두에서 조사 받은 경우 포함

1. 청소년 강제추행 범죄자 관련 사항

1-1. 강제추행 범죄자의 성별

남	195	(100.0%)
여	0	(0.0%)
합계	195	(100.0%)

〈표 80〉 강제추행 범죄자의 성별

1-2. 강제추행 범죄자의 나이

20대	34	(17.4%)
30대	53	(27.2%)
40대	63	(32.3%)
50대	27	(13.9%)
60대	18	(9.2%)
합계	195	(100.0%)

〈표 81〉 강제추행 범죄자의 나이

강제 추행 범죄자는 2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다른 청소년 성범죄에 비해 5,60대의 범죄자들이 많은 편이다. 특히 60대 이상의 범죄자도 9.2%에 이른다.

1-3. 강제추행 범죄자의 혼인상태

미혼	14	(7.1%)
결혼	37	(19.0%)
별거	6	(3.1%)
이혼, 사별	13	(6.6%)
기타*	10	(5.2%)
알 수 없음	115	(59.0%)
합계	195	(100.0%)

〈표 82〉 강제추행 범죄자의 혼인상태

* 기타: 사실혼, 동거 포함

1-4. 강제추행 범죄자의 직업

무직	42	(21.5%)
생산직	67	(34.3%)
서비스, 판매직	29	(14.9%)
자영업	26	(13.4%)
농축어업	8	(4.1%)
사무, 관리직	12	(6.2%)
전문직	6	(3.1%)
학생	2	(1.0%)
군, 경, 공익근무	3	(1.5%)
합계	195	(100.0%)

〈표 83〉 강제추행 범죄자의 직업

1-5. 강제추행 범죄자의 범죄 전력 여부

무	68	(35.1%)
유	127	(64.9%)
합계	195	(100.0%)

〈표 84〉 강제추행 범죄자의 범죄 전력 여부

강제 추행 범죄자의 65.1%는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127명의 범죄자들의 전과 횟수는 평균 4.1회이다.

동종범죄(성폭력)	35	(7.8%)
성매수	1	(0.2%)
절도	70	(15.7%)
강도	6	(1.3%)
폭행, 상해	151	(33.8%)
사기	15	(3.4%)
기타 형사범죄	35	(7.8%)
과실범죄	92	(20.5%)
기타	43	(9.6%)
합계	448	(100.0%)

〈표 85〉 강제추행 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경우, 전과의 범죄 유형

강제 추행 범죄자 중 8%는 동종범죄인 성폭력 범죄나 성매수 범죄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중에서 특히 많은 전과의 범죄 유형은 폭행, 상해로 전체의 33.7%에 이른다.

2. 범행 관련 사항

2-1.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의 성별

여	253	(94.1%)
남	16	(5.9%)
합계	269	(100.0%)

〈표 86〉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의 성별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이 94.1%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남자 청소년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16건이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다른 유형들에 비해, 성추행의 경우는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2-2. 강제 추행 범죄인 당 피해자의 수

1명	154	(79.0%)
2명	26	(13.3%)
3명	8	(4.1%)
4명	3	(1.5%)
5명 이상	4	(2.1%)
합계	195	(100.0%)

〈표 87〉 강제추행 범죄인 당 피해자의 수¹⁴⁾

범죄자 일인 당 피해 청소년의 수를 보면, 피해 청소년이 1명인 경우가 전체의 79.0%이다. 그러나 한 범죄자에 의해 5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한 경우도 2.1% 있다. 한 범죄자에 의한 피해 청소년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21.0%이다.

2-3. 강제추행 범행 장소

가해자의 집	55	(19.9%)
피해자의 집	46	(16.7%)
가정	22	(8.0%)
길(대로, 골목)	42	(15.2%)
자동차 안	21	(7.6%)
놀이터, 학교운동장	20	(7.3%)
공원, 야산 등	19	(6.9%)
사무실	12	(4.3%)
공중화장실	7	(2.5%)
제3자의 집	5	(1.8%)
여관 등	4	(1.5%)
유흥주점, 노래방 등	3	(1.1%)
기타*	20	(7.2%)
합계	276	(100.0%)

〈표 88〉 강제추행 범행 장소

피해자의 범행 피해 경험에 따른 중복 기입

* 기타: 아파트 내, 짐질방, 엘리베이터, 교실, PC방, 건물 옥상 등

14) 피해 청소년의 수는 일반 특성에서 보인 청소년의 수와 차이가 있다. 이는 일반 특성에서는 판결문에 나타난, 처벌을 받은 범죄에 한정한 것인 반면, 본 항에서는 신문 조서 상에 나타난 모든 피해 청소년의 수를 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이 일어난 장소 중 가장 많은 것은 가해자의 집(19.9%), 피해자의 집(16.7%)이다. 친족에 의해 가정 내에서 강제 추행이 일어난 경우도 8.0%에 달한다. 그 외에 길(15.3%), 공원이나 야산(6.9%),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7.3%), 공중 화장실(7.6%)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공 장소에서 일어난 경우도 전체의 37.1%나 된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집과 같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공공 장소도 성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

2-4. 강제추행의 범행수단

말로 협박	27	(9.5%)
흉기로 협박	7	(2.4%)
구타	15	(5.3%)
강력한 수단이용*	5	(1.7%)
유괴	11	(3.9%)
감금	8	(2.8%)
위계, 위력	212	(74.4%)
합계	285	(100.0%)

〈표 89〉 강제추행의 범행 수단

피해자의 범죄 피해 경험에 따른 중복 기입

* 강력한 수단: 흉기로 폭행, 테이프나 끈 등 이용, 약물 이용 등

강제추행의 범행 수단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보다는 위계나 위력(74.4%)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강제추행은 12세 이하의 어린 청소년들이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전체 피해 청소년의 70.6%나 되기 때문(“〈표 97〉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의 나이” 참조)이다. 실제로 나이가 어린 피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당하는 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위압적이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범행을 당하게 된다. 또한 성인 남성의 위압적인 태도와 위력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공포심을 야기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강제수단 없이도 충분한 위협이 된다.

2-5. 강제추행의 정도

접촉(가슴, 몸 만짐)	49	(16.7%)
접촉(가슴, 몸 만짐)+ 키스	21	(7.0%)
접촉+(키스)+성기애무	135	(46.0%)
접촉+(키스)+성기애무+성기접촉	18	(6.1%)
접촉+(키스)+성기애무+성기접촉+성기애무강요	16	(5.5%)
유사성행위	24	(8.1%)
범죄자의 성기애무강요	14	(4.8%)
추행미수	4	(1.4%)
기타*	13	(4.4%)
합계	294	(100.0%)

〈표 90〉 강제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범죄 피해 경험에 따른 중복 기입

* 기타: 성기에 손가락을 넣음, 항문에 성기 삽입, 자위, 나체로 서서 돌게 함, 성기애무+항문에 손가락을 넣음 등

강제추행은 범행에 따라 그 정도의 편차가 크다. 단순한 접촉으로 추행을 한 경우나 추행 미수에 그친 경우도 18.1%이지만, 성기 접촉이나 성기 애무를 강요하거나(16.4%) 유사 성행위를 행한 경우(8.1%)가 24.5%에 달한다. 실질적으로 피해 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 등 이물질을 넣어 추행한 경우나, 항문 성교를 한 경우, 유사 성행위 등은 강간에 준하는 범행도 다수 발견된다.

2-6. 강제추행 범죄자의 피해 청소년과의 관계

모르는 사람	144	(53.3%)
친부	16	(6.0%)
의부	7	(2.6%)
친척	5	(1.9%)
동네사람*	77	(28.7%)
지위이용**	6	(2.2%)
손님-종업원	5	(1.9%)
피해자엄마의 애인	3	(1.1%)
기타***	6	(2.3%)
합계	269	(100.0%)

〈표 91〉 강제추행 범죄자의 피해 청소년과의 관계

* 동네사람: 범죄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친구 관계인 경우 4건, 학원차 운전기사 15건 포함

** 지위이용: 지위를 이용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예를 들어, 교사, 목회자, 고용주, 직장 상사 등)

*** 기타: 딸의 친구, 고시원 거주자와 총무, 채팅 몇 번 한 사이 등

강제추행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이 전체의 53.3%이다. 그러나 아는 사람에 의한 추행도 46.7%이다. 그리고 친부, 의부, 친척 또는 어머니의 애인(동거인) 등에 의해 가정 내에서 강제 추행이 벌어지는 경우도 전체의 11.6%에 이른다. 그 외에는 동네사람에 의한 추행이 전체의 28.7%를 차지한다. 피해 청소년들의 주변 공간에 강제 추행범이 머문다는 사실은 추행이 지속화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표 93〉 피해자와의 관계와 강제추행 범행 지속의 상관성” 참조)

2-7.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의 지속성

1회	197	(73.2%)
2-5회	48	(17.9%)
6-10회	6	(2.2%)
수십 회	14	(5.2%)
수백 회	4	(1.5%)
합계	269	(100.0%)

〈표 9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의 지속성

강제 추행 범죄 중에서 2회 이상 추행이 지속, 반복 된 경우는 전체의 26.8%이다. 이 중에서 수십 회 이상 추행이 지속된 경우가 5.2%, 수백 회 이상 지속된 경우도 1.5% 포함되어 있다.

	2-5회	6-10회	수십 회	수백 회
모르는 사람	12 (25.0%)	0 (0.0%)	0 (0.0%)	0 (0.0%)
친부	2 (4.2%)	3 (50.0%)	6 (42.9%)	3 (75.0%)
의부	2 (4.2%)	0 (0.0%)	3 (21.4%)	1 (25.0%)
친척	1 (2.1%)	0 (0.0%)	2 (14.3%)	0 (0.0%)
동네사람*	20 (41.6%)	2 (33.3%)	3 (21.4%)	0 (0.0%)
지위이용**	2 (4.2%)	0 (0.0%)	0 (0.0%)	0 (0.0%)
손님-종업원	1 (2.1%)	0 (0.0%)	0 (0.0%)	0 (0.0%)
엄마의 애인	3 (6.2%)	0 (0.0%)	0 (0.0%)	0 (0.0%)
기타	5 (10.4%)	1 (16.7%)	0 (0.0%)	0 (0.0%)
합계	48 (100.0%)	6 (100.0%)	14 (100.0%)	4 (100.0%)

〈표 93〉 피해자와의 관계와 강제추행 범행 지속의 상관성

* 동네사람: 범죄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친구 관계인 경우, 학원차 운전기사 포함

**지위이용: 지위를 이용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예를 들어, 교사, 목회자, 고용주, 직장상사 등)

강제 추행이 지속, 반복되는 경우 범죄자와 피해 청소년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는 5회를 넘지 않는 반면, 동네 사람에 의한 경우는 수십 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친부, 의부, 친척 등에 의한 강제 추행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게 고질적이어서, 수년에 걸쳐 수백 회에 이르기까지 지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강제 추행이 수십 회 이상 지속, 반복된 경우는 친부, 의부, 친척 등에 의해 가정 내에서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백 회 이상 지속된 경우는 친부 또는 의부에 의한 것이다.

2-8. 강제추행 범죄가 지속된 경우, 지속기간

1개월 이하	24	(35.3%)
1~5개월	21	(30.9%)
6개월~1년	9	(13.2%)
1~2년	4	(5.9%)
3년 이상	8	(11.8%)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2	(2.9%)
합계	68	(100.0%)

〈표 94〉 강제추행 범죄가 지속된 경우, 지속기간

강제 추행 범죄가 지속된 경우 그 지속 기간은 1개월 이하가 35.3%, 1개월에서 5개월 사이인 경우가 30.9%이다. 그러나 6개월 이상 범죄가 지속 반복된 경우도 30.9%에 이르며, 여기에는 3년 이상 수십 회에서 수백 회에 걸쳐 지속된 경우도 11.8% 포함된다.

2-9. 강제추행 당시, 다른 피해 사항

추행 시 성기상처	17	(46.0%)
구타로 인한 상처	8	(21.6%)
욕설, 모욕	6	(16.2%)
흉기로 인한 상처	2	(5.4%)
녹화, 사진	2	(5.4%)
기타*	2	(5.4%)
합계	37	(100.0%)

〈표 95〉 강제추행 당시, 다른 피해 사항

자료 상에 다른 피해사항이 나타난 경우에 한정

* 기타: 절도, 재범행을 위해 같은 장소에 나타남

강제 추행으로 인한 피해 사항으로 가장 많은 것은 성기 상처(46.0%)이다. 그 외에도 구타나 흉기로 인한 상처가 각각 21.6%, 5.4%를 차지한다.

2-10. 강제추행 이후, 2차 폭력

협박, 공갈	16	(43.3%)
폭행	9	(24.3%)
스토킹	5	(13.5%)
성관계 요구	2	(5.4%)
기타*	5	(13.5%)
합계	37	(100.0%)

<표 96> 강제추행 이후, 2차 폭력

* 기타: 계속 데리고 다님, 이후 강간 2회,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음 등

강제 추행은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전체의 70.6%나 된다.(<표 97>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의 나이” 참조) 강제추행을 당한 청소년들의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는 당 범행에 한정되지 않고, 2차 폭력의 피해에 노출되기도 한다. 진술서 상에서 다른 2차 폭력의 위협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은 51건과 범행이 1회적으로 일어나 다른 피해 사항이 없는 167건을 제외한 37건의 경우는 청소년들이 2차 폭력의 대상이 되었던 정황을 드러낸다. 청소년들은 강제 추행 범죄 이후에도 범죄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공갈을 당하거나(43.3%), 폭행(24.3%)을 당하기도 한다. 또한 강제 추행을 빌미로 청소년을 스토킹하거나(13.5%) 성 관계를 요구(5.4%)하기도 한다.

3.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 관련 사항

3-1.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의 나이

6세 이하	68	(25.4%)
7-9세	60	(22.4%)
10-12세	61	(22.8%)
13세	15	(5.6%)
14세	15	(5.6%)
15세	18	(6.3%)
16세	15	(5.6%)
17세	11	(4.1%)
18세	6	(2.2%)
합계	269	(100.0%)

<표 97>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의 나이

강제 추행 범죄는 12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전체의 70.6%에 달 한다. 그 중에는 6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이 25.4%나 포함되어 있다. 13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는 전체의 29.4%이다. 강제추행은 다른 청소년 성범죄들과는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2.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의 학력

취학 전	62	(23.1%)
초등학교재학	117	(43.7%)
중학교재학	41	(14.9%)
중학교중퇴	1	(0.4%)
고등학교재학	29	(10.8%)
고등학교중퇴	3	(1.1%)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16	(6.0%)
합계	269	(100.0%)

<표 98>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의 학력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들 중 23.1%는 미취학 아동들이며,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이 43.7%, 중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이 14.9%에 이른다.

3-3.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의 직업

취학 전	62	(23.1%)
학생	187	(69.4%)
무직	9	(3.4%)
기타*	4	(1.5%)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7	(2.6%)
합계	269	(100.0%)

<표 99>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의 직업

* 기타: 휴학 중 1건, 유흥업소 종업원 2건 등

강제추행 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미취학 아동이거나 학생이다. 이는 학생 집단 만이 강제 추행 범죄의 피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가출 청소년이나 학업 중퇴 청소년 집단에서는, 강제추행 범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3-4.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의 가출여부

가출	7	(2.6%)
가출하지 않은 상태	237	(88.1%)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25	(9.3%)
합계	269	(100.0%)

<표 100>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의 가출여부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의 대부분은 비가출 청소년들이다. 특히 나이가 어린 아동들이 추행 피해 청소년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 집단이 피해를 당한 경우의 비율이 아주 낮게 나타난다. 흔히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의 취약 집단으로 가출 청소년이나 학업 중퇴 청소년을 고려하지만, 가정이나 학교 주변의 공간 또한 성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특히 강제추행 범죄는, 다른 청소년 성범죄와 달리 어느 공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나 상존하는 위협으로 여겨진다.

3-5.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의 장애여부

장애 없음*	263	(97.8%)
정신장애	2	(0.7%)
지능이 낮음	4	(1.5%)
합계	269	(100.0%)

<표 101>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의 장애여부

* 장애 없음: 장애여부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포함

진술서 상에 특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모두 청소년이 특별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로 생각하면, 피해 청소년의 대부분은 비장애 청소년이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지능이 낮은 청소년에 대한 성추행이 6건 포함되어 있다.

3-6. 강제추행 사건 이후 신고 여부

사건직후 신고	139	(51.5%)
추후에 신고	83	(30.9%)
신고하지 않음	12	(4.5%)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35	(13.1%)
합계	269	(100.0%)

<표 102> 강제추행 사건 이후 신고 여부

강제 추행 범행이 있고 나서 사건 직후에 신고한 경우는 51.5%, 추후에 신고한 경우는 30.9%이다. 사건 직후에 신고한 경우가 강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피해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린 아동들이 많고, 부모나 현장 목격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35> 강간 사건 이후 신고 여부” 참조)

본인	23	(16.7%)
부모	75	(54.3%)
교사	3	(2.2%)
현장목격자	15	(10.9%)
다른 가족	5	(2.9%)
기타*	1	(0.7%)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17	(12.3%)
합계	139	100.0%

<표 103> 강제추행 사건 직후 신고한 경우, 신고자

* 기타: 친구의 아버지

범행 직후 신고를 한 138건 중에서 부모나 다른 가족이 신고를 한 경우가 57.2% (각각 54.3%, 2.9%),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한 경우가 16.7%이다. 그리고 현장목격자에 의한 신고도 10.9%를 차지한다.

보복 당할까봐, 가해자의 위협	0	(0.0%)
부모님, 주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3	(25.0%)
기타*	1	(8.3%)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8	(66.7%)
합계	12	(100.0%)

<표 104> 강제추행 사건 직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기타: 범죄자가 아빠 친구이고, 다시 같은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

강제 추행 범행 직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2건)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66.7%(8건)이지만, 청소년의 입장에서 부모님이나 주변에 강제 추행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피하고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25.0%(3건)이다. 청소년들은 성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동시에 범죄자의 협박과 공갈 등의 2차 폭력에 노출될 뿐 아니라, 범죄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드러내는 일을 두려워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고 협박	3	(3.6%)
가해자가 범죄를 지속해서	13	(15.7%)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2	(2.4%)
주변 사람이 신고	9	(10.9%)
나중에 부모가 알게 되어 신고	40	(48.2%)
기타*	8	(9.6%)
알 수 없음	8	(9.6%)
합계	83	(100.0%)

<표 105> 강제추행 사건 직후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 신고한 경우, 그 경위

* 기타: 경찰의 경거,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직접 신고, 다른 사람에 대한 추행 사건 조사 시 밝혀짐, 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짐, 범죄자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지속하는 것을 보고 직접 신고, 추후에 범죄자를 보게 되어 신고 등

범행 직후에는 신고하지 않았으나 추후에 신고를 한 경우가 83건으로 전체 피해 청소년의 31.0%를 차지한다. 이들이 추후에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은 나중에 부모가 알게 되어 신고하게 된 경우로 48.2%(40건)이다.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이 나이가 어린 아동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이 있더라고 직후에 알려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보여진다. 추후에 신고하게 된 청소년 중 19.3%는 범죄자의 범행이 지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또는 범죄자가 계속 연락하고 협박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답했다. 범죄자가 피해 청소년을 범행 이후에도 계속 괴롭힐 수 있는 이유는, 청소년 자신이 그 상황을 제어할 수 없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들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3-7. 청소년이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

부모	95	(35.5%)
친구	13	(4.9%)
다른 가족, 친척	18	(6.3%)
상담소 등	2	(0.7%)
경찰에 신고	18	(6.7%)
말하지 않음	2	(0.7%)
교사	20	(7.5%)
현장검거	56	(20.9%)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45	(16.8%)
합계	269	(100.0%)

<표 106> 청소년이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들은 그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 경우가 가장 많다 (35.4%). 또한 현장에서 겸거된 경우도 20.9%에 달한다. 부모이외에 청소년들이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은 교사(7.5%), 다른 가족이나 친척(6.3%), 친구(4.9%) 등이며,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경우도 6.7%이다. 그러나 상담소 등을 통해 범행 피해 사실을 해결하고자 한 경우는 전체 268건 중 2건뿐이다.

3-8. 강제추행 이후 피해 청소년의 상태

신체적 외상	21	(7.8%)
심리적불안, 대인기피	27	(10.1%)
심리치료 필요	9	(3.4%)
없음	8	(3.0%)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204	(75.7%)
합계	269	(100.0%)

<표 107> 강제추행 이후 피해 청소년의 상태

강제추행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외상을 남긴다. 그러나 피해자 참고인 진술서에서 범행 이후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상세히 물은 경우는 전체의 24.3%에 불과하다. 전체 268건 중 203건의 피해자 진술 조서에서는 해당 질문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 청소년들은 범행 피해 이후 신체적 외상(7.8%) 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 대인기피(10.1%)와 심리 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심리적 외상(3.4%)을 호소한다.

3-9. 강제추행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처벌을 원함	215	(79.8%)
처벌을 원하지 않음	4	(1.5%)
“잘 모르겠다”고 진술	11	(4.1%)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39	(14.6%)
합계	269	(100.0%)

<표 108> 강제추행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IV. 강간

제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 공개 심사 대상이 된 강간 사건은 모두 192건이며, 이중 89.0%인 170건이 공개된다.

본 분석에서는 신상 공개 대상 강간 범죄 170건의 자료를 중심으로 강간 범죄의 특성과 피해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해 분석한다.

경찰	0	(0.0 %)
검찰	170	(100.0%)
합계	170	(100.0%)

<표 109> 강간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자

1. 강간 범죄자 관련 사항

1-1. 강간 범죄자의 성별

남	170	(100.0%)
여	0	(0.0%)
합계	170	(100.0%)

<표 110> 강간 범죄자의 성별

1-2. 강간 범죄자의 나이

10대	4	(2.4%)
20대	74	(43.5%)
30대	48	(28.3%)
40대	32	(18.8%)
50대	7	(4.1%)
60대	5	(2.9%)
합계	170	(100.0%)

<표 111> 강간 범죄자의 나이

강간 범죄자의 나이는 43.5%가 20대, 28.3%가 30대, 18.8%가 40대로, 20대가 가장 많다. 10대에 의한 강간 사건 중 4건은 공개된다. (이 사건의 범죄자는 모두 범

행 당시 19세이다.) 그 외에도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강간 범죄 중에서도 16 건은 10대에 의한 것이다. 이는 전체 강간 범죄(신상공개 및 비공개의 합) 192건의 10.4%를 차지한다. 청소년에 의한 강간은 범죄자 자신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이들에 의한 범행은 다른 강간 범행 못지 않게 심각하다. 청소년에 의한 강간은 윤간인 경우가 많고, 또 이들 강간 범죄 청소년들의 경우 동일한 범죄(강간)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청소년들의 또래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강간 사건의 경우,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에 의한 성폭력 범죄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1-3. 강간 범죄자의 혼인상태

미혼	16	(9.4%)
결혼	24	(14.1%)
별거	4	(2.4%)
이혼, 사별	10	(5.9%)
기타*	7	(4.1%)
알 수 없음	109	(64.1%)
합계	170	(100.0%)

<표 112> 강간 범죄자의 혼인상태

* 기타: 동거, 사실혼 등

1-4. 강간 범죄자의 직업

무직	53	(31.2%)
생산직	33	(19.4%)
서비스, 판매직	32	(18.8%)
자영업	13	(7.7%)
농축어업	8	(4.7%)
사무, 관리직	13	(7.7%)
전문직	4	(2.3%)
학생	6	(3.5%)
군, 경, 공익근무	6	(3.5%)
기타	2	(1.2%)
합계	170	(100.0%)

<표 113> 강간 범죄자의 직업

강간 범죄자의 직업을 보면 전체의 31.2%가 무직자이다. 이는 전체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 중 무직자가 14.4%인 것에 비해 두 배가 넘는 비율이다. 그리고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학생(3.5%), 군경, 공익근무 요원(3.5%)의 비율이 높다. (전체 신상 공개 대상 성범죄자 중 학생은 1.6%, 군경, 공익근무 0.7%이다.) (<표 12> 범죄자의 직업” 참고) 그러나 강간 범죄 또한 모든 직업군에 있는 범죄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1-5. 강간 범죄자의 범죄 전력 유무

무	36	(21.2%)
유	134	(78.8%)
합계	170	(100.0%)

<표 114> 강간 범죄자의 범죄 전력 유무

강간 범죄자 중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78.9%이다.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평균 전과 횟수는 3.6회이다.

동종범죄(성폭력)	35	(7.3%)
절도	69	(14.4%)
강도	15	(3.1%)
폭행, 상해	114	(23.7%)
사기	29	(6.0%)
기타 형사범죄	33	(6.9%)
과실범죄	142	(29.6%)
기타	43	(9.0%)
합계	480	(100.0%)

<표 115> 강간 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경우, 전과의 범죄 유형

이들 중 동종범죄인 성폭력 범죄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전체의 7.3%인 35 건이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비교적 높다(강제추행 7.8%, 강간 7.3%). 그 외에는 폭행, 상해 등의 범죄가 23.7%, 절도 14.4%, 강도 3.1%, 기타 형사 범죄 6.9%, 과실 범죄가 29.5%이다.

2. 강간 범행 관련 사항

2-1. 강간 피해자의 수

1명	144	(84.7%)
2명	14	(8.2%)
3명	6	(3.5%)
4명	3	(1.8%)
5명 이상	3	(1.8%)
합계	170	(100.0%)

<표 116> 강간 범죄자 당 피해자의 수¹⁵⁾

동일한 범죄자에 의한 강간 피해 청소년의 수가 1명인 경우가 84.7%이지만, 2명 이상의 강간 피해자가 있는 경우도 전체의 15.3%에 달한다. 이 중에는 4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피해를 당한 경우도 6건(3.6%) 포함되어 있다.

2-2. 강간의 범행 장소

피해자의 집	57	(22.3%)
가정	37	(14.5%)
가해자의 집	36	(14.1%)
자동차 안*	60	(23.4%)
여관 등	22	(8.6%)
공원, 야산 등*	17	(6.6%)
제3자의 집	9	(3.5%)
길(대로, 골목)	6	(2.3%)
유흥주점, 노래방 등	3	(1.2%)
기타**	9	(3.5%)
합계	256	(100.0%)

<표 117> 강간의 범행 장소

종복 기입(한 범죄자에 의한 다수의 범행)

* 자동차 안/공원, 야산 등: 윤간 (범죄자 당 복수 기입)

** 기타: 사무실, 공중화장실, 직장지하실, 은행 복도,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아파트 지하실 등

15) 피해 청소년의 수는 일반 특성에서 보인 청소년의 수와 차이가 있다. 이는 일반 특성에서는 판결문에 나타난, 처벌을 받은 범죄에 한정한 것인 반면, 본 항에서는 신문 조서 상에 나타난 모든 피해 청소년의 수를 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 피해 청소년에 대한 다수의 강간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윤간의 경우)

장간 범행 장소로 가장 많은 것은 피해자의 집(36.8%; 피해자의 집 22.3%, 가정 14.5%)이다. 청소년이 보호 받고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공간인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는 장간 사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외부의 침입 등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범죄자와 피해자가 한 가정 안에 머무는, 친부, 의부, 친척 등에 의한 장간도 15.3%나 된다.(“<표 122> 장간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참조) 그 밖에 가장 많은 범행 장소는 자동차 안(23.4%)에서 일어나는 유품 범죄인데, 이는 피해 청소년을 납치, 유인하여,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이동하면서 장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밖에 가해자의 집에서 장간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14.1%, 여관 등이 8.6%이며, 공원, 야산 등 실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6.6%이다.

2-3. 장간의 범행 수단

흉기로 협박	39	(11.8%)
구타	61	(18.5%)
흉기로 폭행	7	(2.1%)
인신속박	14	(4.2%)
유괴	14	(4.2%)
약물이용	2	(0.6%)
감금	17	(5.2%)
말로 협박	86	(26.1%)
위계, 위력	88	(26.7%)
기타*	2	(0.6%)
합계	330	(100.0%)

<표 118> 장간의 범행 수단

종복 기입(한 범죄자에 의한 다수의 범행 및 동시적 수단의 사용)

* 기타: 가짜 경찰신분증과 권총으로 협박

장간의 범행 수단으로 가장 많은 것은 흉기 협박(11.9%), 구타(18.5%), 흉기 폭행(2.1%), 인신 속박(4.2%), 유괴(4.2%), 약물 이용(0.6%), 감금(5.2%)과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이용한 경우로, 전체의 46.6%에 달한다. 단순히 말로 협박하거나(26.0%),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26.7%) 위협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범행의 대상이 나이 어린 청소년이 많고,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가까운 어른과 보호 받는 청소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일견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참고인 진술서를 살펴보면, 수사관이 범행 당시 범행 수단의 직접성이나 반항 정도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를 다수 발견하게 된다. 이는 청소년 대상 장간이라는 범죄의 고유성을 간과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피해 청소년들에게 2차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강간 범죄 사건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는 일은 경찰이나 검찰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지만, 범죄의 고유성에 근거하여 강간 피해자는 단순한 증인이 아닌 범죄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더욱이 그 피해 당사자가 청소년 일 경우 더욱 섬세한 배려와 보호 조치들이 요청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 진술 조서들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 및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4. 강간 유형

단순강간	129	(54.0%)
강도강간	15	(6.3%)
윤간	23	(9.6%)
윤간+강도	22	(9.2%)
강간미수	50	(20.9%)
합계	239	(100.0%)

<표 119> 강간 유형

중복 기입(한 범죄자에 의한 다수의 범행)

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의 25.0%는 강도 강간(6.3%), 윤간(9.6%), 강도 윤간(9.2%)이다. 또한 신상공개 대상 강간 범죄 중에는 강간 미수 20.8%가 포함되어 있다. 강간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특별법 제12조(특수강도 강간 미수범)과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5항(여자 청소년에 대한 강간 미수범)에 의거한 것이다.

2명	20	(54.1%)
3명	14	(37.8%)
4명	3	(8.1%)
5명 이상	0	(0.0%)
합계	37	(100.0%)

<표 120> 윤간의 경우 공범자의 수

윤간 및 윤간 강도 45건 중 십대 공범자 제외

윤간의 경우 공범자가 2명인 경우는 54.1%이다. 공범자가 3명인 경우가 37.8%, 4명인 경우는 8.1%이다.

2-5. 강간과 타 범죄와의 관계

성매수를 빙자하여 유인	19	(16.1%)
강간과 성추행이 공존하는 경우	27	(22.8%)
주거침입	40	(34.0)
폭행, 상해	19	(16.1%)
기타*	13	(11.0%)
합계	118	(100.0%)

<표 121> 강간과 타 범죄와의 관계

* 기타: 카메라 이용 촬영, 성기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유해물질관리법 위반, 절도, 강도, 강금, 공갈,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각각 그 범죄 유형에 따라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각각의 범죄 유형들이 넘나드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강간 범죄에 있어서도 다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성매수를 빙자하여 청소년을 유인, 강간한 경우가 19건(16.1%)이나 된다. 또한 강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추행과 더불어 강간을 범하는 경우도 27건(22.8%)에 이른다. 청소년 대상 성 범죄 뿐 아니라, 강도, 주거 침입, 폭행, 상해 등의 범죄와 공존하는 경우도 72건이다.

2-6. 강간 범죄자의 피해자와의 관계

모르는 사람	124	(54.4%)
친부	15	(6.6%)
의부*	14	(6.1%)
친척**	6	(2.6%)
친구	6	(2.6%)
동네사람	26	(11.4%)
지위이용***	3	(1.3%)
안면 있음****	25	(11.0%)
범죄자친구의 딸	5	(2.2%)
기타*****	4	(1.8%)
합계	228	(100.0%)

<표 122> 강간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중복기입(한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공범자)

* 의부: 의부, 모의 동거인, 모의 애인 등 포함

** 친척: 의붓오빠, 형부, 매형의 전처 소생-범률상 외삼촌, 친조부 등

*** 지위이용: 지위를 이용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예를 들어, 교사, 목회자, 고용주, 직장상사 등)

**** 안면 있음: 손님-종업원, 술자리에서 만난 경우 등 우연히 알게 된 사이

***** 기타: 소개소-종업원 관계로 1년간 알아 옴, 직장동료, 피해자 친구의 아버지, 조카의 부탁으로 가출청소년을 재워줌 등

장간 범죄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전체의 54.4%이다. 그러나 45.6%는 모두 청소년의 가정 내에서,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터나 놀이 공간 내에서 알던 사람에 의해 범해지는 경우이다. 특히 친부에 의한 경우가 6.6%, 의부(어머니의 동거인, 애인 포함)에 의한 경우가 6.1% 그리고 그 밖의 가족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2.6%에 달한다. 동네 사람에 의한 장간도 전체의 11.4%이며, 이러한 관계에서 알게 된 사이에서 벌어지는 장간이 10.9%이다.

2-7.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장간 범죄의 지속성 여부

1회	146	(68.5%)
2-5회	32	(15.0%)
6-10회	9	(4.2%)
수십 회	14	(6.7%)
수백 회	12	(5.6%)
합계	213	(100.0%)

〈표 123〉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장간 범죄의 지속성 여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장간 범죄의 지속성을 살펴보면, 2회 이상 장간이 지속된 경우가 전체의 31.5%나 된다. 이 중에는 수십 회(6.8%), 수백 회(5.6%) 장간이 지속, 반복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2-5회	6-10회	수십 회	수백 회
모르는 사람	14 (43.7%)	0 (0.0%)	3 (21.5%)	0 (0.0%)
친부	1 (3.1%)	3 (33.4%)	7 (50.0%)	4 (33.4%)
의부	3 (9.4%)	0 (0.0%)	2 (14.3%)	6 (50.0%)
친척	1 (3.1%)	0 (0.0%)	0 (0.0%)	1 (8.3%)
친구	1 (3.1%)	1 (11.1%)	0 (0.0%)	0 (0.0%)
동네사람	8 (25.0%)	2 (22.2%)	1 (7.1%)	0 (0.0%)
지위권력관계	0 (0.0%)	1 (11.1%)	0 (0.0%)	0 (0.0%)
안면 있음	2 (6.3%)	1 (11.1%)	0 (0.0%)	0 (0.0%)
기타	2 (6.3%)	1 (11.1%)	1 (7.1%)	1 (8.3%)
합계	32 (100.0%)	9 (100.0%)	14 (100.0%)	12 (100.0%)
전체 합계	67			

〈표 124〉 범죄자의 피해자와의 관계와 장간 범죄 지속의 상관성

장간이 지속되는 경우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보다는, 청소년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범죄자에 의한 경우이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장간의 지속은 5회를 넘기지 않

는 반면, 수십, 수백 회 반복, 지속되는 경우는 청소년의 가정 내에서 친부, 의부, 친척 등에 의해 강간이 범해지는 경우이다. 동네 사람이나 지위 권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강간도 수회 반복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강간이 수백 회 지속된 경우를 보면, 친부에 의한 경우가 4건, 의부에 의한 경우가 6건, 친척에 의한 경우가 1건이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강간 범행은 끈질긴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청소년은 가정을 떠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강간 범행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1개월이하	21	(31.4%)
1~5개월	11	(16.4%)
6개월~1년	12	(17.9%)
1~2년	10	(14.9%)
3년 이상	10	(14.9%)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3	(4.5%)
합계	67	(100.0%)

〈표 125〉 강간 범죄가 지속된 경우, 지속기간

강간이 반복, 지속된 경우 지속기간은 3년 이상이 14.9%, 1년에서 2년 사이가 14.9%,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17.9%, 1개월에서 5개월 사이가 16.4%, 1개월 이하가 31.3%이다. 3년 이상 강간이 지속된 경우 강간 횟수는 수백 회에 이른다.

2-8. 강간 범죄 시, 사정 여부

질외사정	23	(10.4%)
질내사정	48	(21.6%)
사정하지 않음	59	(26.6%)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91	(41.4%)
합계	221	(100.0%)

〈표 126〉 강간 범죄 시, 사정 여부

강간 범죄 시 사정 여부를 살펴보면, 특기할 사항은 사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26.6%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강간 시에 발기가 되지 않거나, 조루하여 사정을 하지 못한 경우, 술이 취한 상태에서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이는 강간이 단순히 '성욕 해소'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성 및 존재에 대한 지배로써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강간은 성을 매개로 한, 함부로 할 수 있는 무력한 상대에 대한 폭력이다. 성폭력 범죄는 흔히 성적 충동이 그 이유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주거 침입 등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행위가 개입된 경우가 34.4%("〈표 121〉 강간과 타범죄와의 관계" 참조)이며, 윤간 등 공범 여러 명이 공모와 계획에 의해 범하는 경우도 18.8%("〈표 119〉 강간 유형" 참조)나 된다.

2-9. 강간 범행 시, 다른 피해 사항

욕설, 모욕	61	(34.9%)
구타로 인한 상처	60	(34.3%)
강간 시 성기상처	35	(20.0%)
녹화, 사진	9	(5.1%)
흉기로 인한 상처	8	(4.6%)
기타*	2	(1.1%)
합계	175	(100.0%)

〈표 127〉 강간 범행 시, 다른 피해 사항

다른 피해 사항이 있는 경우 175건

* 기타: 성병 감염, 협박/마약 투약

강간 범행 시 피해 청소년들은 성기에 상처를 입거나(20.0%), 물리적 폭력에 의해 신체적 상처(38.9%) 입는다. 또한 빈번하게 범죄자에 의해 정신적 모욕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34.9%) 또한 강간 장면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어, 피해 청소년을 협박한 경우도 9건이나 발견된다. 강간으로 인해 성병에 감염되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 당한 경우도 있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욕설, 모욕	43	(24.5%)	11	(6.3%)	4	(2.2%)	1	(0.6%)	2	(1.2%)
구타로 인한 상처	27	(15.4%)	19	(10.8%)	9	(5.2%)	2	(1.1%)	3	(1.7%)
흉기로 인한 상처	3	(1.7%)	4	(2.3%)	1	(0.6%)	0	(0.0%)	0	(0.0%)
녹화, 사진	8	(4.6%)	0	(0.0%)	1	(0.6%)	0	(0.0%)	0	(0.0%)
강간 시 성기상처	10	(5.7%)	15	(8.6%)	6	(3.4%)	4	(2.3%)	0	(0.0%)
기타*	1	(0.6%)	1	(0.6%)	0	(0.0%)	0	(0.0%)	0	(0.0%)
합계	92	(52.5%)	50	(28.6%)	21	(12.0%)	7	(4.0%)	5	(2.9%)
전체	175	(100.0%)								

〈표 128〉 강간 범죄자의 나이와 강간 범행 시 다른 피해 사항의 상관성

* 기타: 성병감염+마약 강제 투약

강간 범행 시 피해 청소년들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는 범죄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많은 것으로 보인다. 20대의 범죄자에 의한 범행에서 강간에 동반되는 폭력의 정도와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52.5%)

2-10. 강간 범행 이후, 2차 폭력

협박, 공갈	44	(59.5%)
스토킹	4	(5.4%)
금품요구	3	(4.0%)
성매매 요구	1	(1.3%)
폭행	11	(14.9%)
임신	6	(8.1%)
기타*	5	(6.8%)
합계	74	(100.0%)

〈표 129〉 강간 범행 이후, 2차 폭력

* 기타: 강금, 강시/부녀매매 미수, 강도 등

청소년은 강간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위해를 당할 뿐 아니라, 범행 이후 범죄자들의 2차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강간 피해자들은 성범죄의 피해자이면서도, 지속되는 범죄자의 2차 폭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간 이후 오히려 협박과 공갈을 당하는 경우가 44건(2차 폭력이 있는 경우의 59.5%)이며, 폭행을 당한 경우도 11건(2차 폭력이 있는 경우의 14.9%)이다. 또한 강간 이후 금품을 요구하거나(3건) 성매매를 요구한 경우(1건), 인신 매매를 시도하다가 미수한 경우도 있다. 또한 강간 이후 오히려 청소년을 따라다니며 괴롭힌 경우도 4건이며, 강간으로 인해 피해 청소년이 임신을 하게 된 경우도 6건이다.

3. 강간 피해 청소년 관련 사항

3-1. 강간 피해 청소년의 나이

6세 이하	7	(3.3%)
7~9세	13	(6.1%)
10~12세	33	(15.4%)
13세	15	(7.0%)
14세	17	(7.9%)
15세	35	(16.8%)
16세	38	(17.8%)
17세	33	(15.4%)
18세	22	(10.3%)
합계	213	(100.0%)

〈표 130〉 강간 피해 청소년의 나이

장간 피해 청소년 중 12세 이하가 전체 피해 청소년의 24.8%에 이른다. 여기에는 9세 이하의 아동 9.4%(이 중 6세 이하 3.3%)가 포함된다. 장간 피해가 가장 많은 나이는 16세(17.8%)이고, 15세와 17세가 각각 16.8%, 15.4%이다.

3-2. 장간 피해 청소년의 학력

취학 전	4	(1.9%)
초등학교재학	36	(16.8%)
중학교재학	41	(19.6%)
중학교중퇴	7	(3.3%)
중학교졸업	0	(0.0%)
고등학교재학	73	(34.1%)
고등학교중퇴	12	(5.6%)
고등학교졸업	3	(1.4%)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37	(17.3%)
합계	213	(100.0%)

〈표 131〉 장간 피해 청소년의 학력

장간 피해 청소년은 고등학교 재학생이 34.1%, 중학교 재학생이 19.6%, 초등학교 재학생이 16.8%이다. 학업 중단 청소년은 전체의 8.9%에 불과하다.

3-3. 장간 피해 청소년의 직업

취학 전	4	(1.9%)
학생	150	(70.6%)
휴학 중	2	(0.9%)
무직	19	(8.9%)
유통업소종업원	18	(8.4%)
아르바이트	3	(1.4%)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17	(7.9%)
합계	213	(100.0%)

〈표 132〉 장간 피해 청소년의 직업

강제 추행과 마찬가지로, 성매수 범죄와는 달리 장간 피해 청소년들 중 재학생의 비율은 70.6%에 달한다. 휴학 중이거나 무직인 청소년이 장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전체의 9.4%이다. 또한 유통업소 종업원인 경우가 8.4%, 아르바이트생인 경우가

1.4%이다. 특히 유흥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업소 주변 인물이나 손님 등에 의해 강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범죄자들은 성매매를 위장하여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는데, 경찰이 오히려 피해 청소년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유흥업소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강간을 당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 부담을 갖게 되는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 이게 되기도 한다. 성매매 알선 피해 청소년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성매매 업소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표 68〉 성매수 알선 범죄에서의 타 범죄의 발생” 참고), 청소년들은 이러한 범죄를 당하게 되더라도 신고를 기피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3-4. 강간 피해 청소년의 가출 여부

가출	23	(10.8%)
가출하지 않은 상태	136	(63.9%)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54	(25.3%)
합계	213	(100.0%)

〈표 133〉 강간 피해 청소년의 가출 여부

강간 피해 청소년은 85.6%(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은 54건을 제외한 전체 160 건 중 137건)가 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가출 청소년은 14.4%이다. 이는 첫째, 청소년들에게 강간과 같은 성폭력 범죄는 단순히 학업 중단 집단 및 가출 집단과 같은 ‘위험 집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강간은 가정이나 학교 공간 안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예외적인 범죄가 아니다. 성범죄가 만연한 상황에서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은 없다. 둘째, 가출 청소년 집단의 경우 강간과 같은 성폭력 범죄를 당하게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이나 보호자, 신뢰 집단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가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의 남자 청소년 및 다양한 성인 남성의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데, 가출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범행이 발생하게 되더라고 적극적으로 이를 드러내거나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집단에 있어 성폭력 범죄는 더 비가시화된다.

3-5. 강간 피해 청소년의 장애 여부

장애 없음	205	(96.3%)
신체장애	0	(0.0%)
정신장애	2	(0.9%)
지능이 낮음	6	(2.8%)
합계	213	(100.0%)

〈표 134〉 강간 피해 청소년의 장애 여부

* 장애 없음: 장애 여부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포함

강간 피해 청소년 중 장애가 있거나 지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는 전체의 3.7%인 8건이다.

3-6. 강간 사건 이후 신고 여부

사건직후 신고	76	(36.0%)
추후에 신고	80	(37.4%)
신고하지 않음	10	(4.7%)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47	(21.9%)
합계	213	(100.0%)

〈표 135〉 강간 사건 이후 신고 여부

강간 범행에 대해 사건 직후에 신고한 경우는 36.0%인 76건이다. 사건 직후에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에 신고한 경우가 37.4%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4.7%에 이른다.

본인	27	(35.0%)
부모	21	(27.3%)
현장목격자	7	(9.1%)
업주	2	(2.6%)
다른 가족	1	(2.6%)
교사	1	(1.3%)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17	(22.1%)
합계	76	(100.0%)

〈표 136〉 강간 사건 직후 신고한 경우, 신고자

범행 직후에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본인인 경우가 35.0%, 부모가 신고한 경우가

27.3%이다. 그 외에 현장 목격자에 의한 신고가 9.2%, 다른 가족이나 업주, 교사에 의해 신고된 경우도 있다.

부모님, 주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4	(36.3%)
보복이 두려워서, 가해자의 위협	3	(27.3%)
기타*	1	(9.1%)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3	(27.3%)
합계	11	(100.0%)

〈표 137〉 강간 사건 직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기타: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강간 피해 청소년이 범죄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부모님이나 주변에 강간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범죄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나중에 부모가 알게 되어 신고	26	(32.9%)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9	(11.4%)
주변 사람이 신고	7	(8.9%)
가해자가 범죄를 지속해서	7	(8.9%)
경찰의 검거	3	(3.8%)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고 협박	2	(2.5%)
기타*	11	(13.9%)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14	(17.7%)
합계	79	(100.0%)

〈표 138〉 강간 사건 이후, 추후에 신고한 경우, 그 경위

* 기타: TV에서 같은 범행 뉴스를 보고 신고, 동생도 범행 피해자가 될 것 같아 신고, 부모에게 알려질까 망설이다 신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의심만 하였으나 추후에 확인하고 신고, 계속 악몽에 시달려 신고하기로 결심, 어머니에게 초기 추행 사실을 이야기했으나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자살 기도 후 본인이 직접 신고, 이혼 후 강간한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자 본인이 직접 신고, 업주는 신고를 만류했으나 강간의 위협을 계속 느껴 추후 신고, 길에서 가해자를 알아보고 추적하여 검거

강간 사건 직후에 신고하지 않다고 추후에 신고하게 된 경위를 보면, 나중에 부모가 알게 되어 신고한 경우가 26건(32.9%)이고,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이 신고하거나(7건, 8.9%), 신고를 권유하여(9건, 11.4%) 신고한 경우가 16건이다. 그 밖에 범죄자가 범행을 반복, 지속해서 신고한 경우도 7건에 이른다.

3-7. 청소년이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

부모	39	(18.3%)
친구	24	(11.3%)
경찰에 신고	20	(9.4%)
다른 가족, 친척	12	(5.6%)
현장검거	13	(6.1%)
업소 주변인물	11	(5.1%)
교사	3	(1.5%)
상담소 등	0	(0.0%)
말하지 않음	14	(6.6%)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77	(36.1%)
합계	213	(100.0%)

〈표 139〉 청소년이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

범죄 신고 과정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상담소 등을 통한 신고이다. 이는 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받은 사항이 진술서 상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청소년들이 강간 등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소 등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신뢰 관계에 있는 부모나 친구에게 알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각각 18.3%, 11.3%). 그 외에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경우와 현장 검거된 경우가 각각 9.4%, 6.1%이다. 또한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업소 주변 인물에게 강간 사실을 알린 경우가 11건이며, 업주가 강간 범죄 신고를 한 경우도 2건("〈표 136〉 강간 사건 직후 신고한 경우, 신고자" 참고) 있다.

3-8. 강간 피해 이후 청소년의 상태

신체적 외상	60	(28.0%)
심리적 불안, 대인기피	24	(11.2%)
심리치료 필요	10	(4.7%)
없음	7	(3.3%)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112	(52.8%)
합계	213	(100.0%)

〈표 140〉 강간 피해 이후 청소년의 상태

강간 이후의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피해자 진술 조서 상에서 강간 이후 현재 청소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하자는 않는지를 묻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52.8%에 달하는 112건이다. 진술서 상에 그 내용이 있는 경우 중에서 신체적 외상이 있는 경우는 59.4%(진술서 상에 나타난 101건 중 60건)이고, 심리적 불안과 대인 기피증을 호소한 경우가 23.2%(23건), 그리고 심리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9.9%(10건)이다. 이 모든 피해 청소년들이 신체적, 심리적 외상에 대한 정확한 검사, 진단과 치료를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3-9. 강간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처벌을 원함	169	(79.3%)
처벌을 원하지 않음	7	(3.3%)
“잘 모르겠다”고 진술	1	(0.5%)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36	(16.9%)
합계	213	(100.0%)

〈표 141〉 강간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강간 범죄자에 대해 79.3%는 처벌을 원한다고 답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는 복잡한 개인적 사정과 배경이 작용하는 경우들이 발견된다. 친부나 의부 등 가족 관계 내에서 강간 사건이 벌어질 경우, 범죄자가 수감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부채와 같은 복잡한 가정 경제 문제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제4차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고서

제4차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고서

1. 범죄유형별 특징

<표 1> 범죄유형별 및 형량

형량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계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실형	126(60.6)	116(55.0)	65(32.5)	71(41.8)	9(5.8)	16(9.0)	10(14.3)	13(11.7)			210(32.7)	216(32.2)
집행유예	82(39.4)	95(45.0)	120(60.0)	91(53.5)	99(63.9)	100(56.2)	60(85.7)	97(87.4)	10(100)	1(100)	371(57.7)	384(57.2)
벌금			15(7.5)	8(4.7)	46(29.7)	62(34.8)		1(0.9)			61(9.5)	71(10.6)
기타 (선고유예)					1(0.6)						1(0.1)	
계	208(100)	211(100)	200(100)	170(100)	155(100)	178(100)	70(100)	111(100)	10(100)	1(100)	643(100)	671(100)

범죄유형별로는 강간 208명(32.3%), 강제추행 200명(31.1%), 성매수 155명(24.1%), 성매수알선 70명(10.9%), 음란물제작 등 10명(1.6%)으로 나타났다. 전체대상자중 성매수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55.9%인 683명인데 이중 공개자는 155명으로 매우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형량별로는 집행유예가 가장 많은 비율인 57.7%(371명)를 차지, 그 다음이 실형 32.7%(210명), 벌금 9.5%(61명), 선고유예 0.1%(1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2> 성별분포

성별	인원	
	제4차(%)	제3차(%)
남	612(95.2)	618(92.1)
여	31(4.8)	53(7.9)
계	643(100)	671(100)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95.2%(612명)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3차 공개자 남성의 비율인 92.1%(618명)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표 3> 연령 분포

연령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계	
	제4차 (%)	제3차 (%)										
20대	93(41.7)	97(45.3)	25(125)	24(144)	35(226)	34(19.1)	26(37.1)	29(26.1)	1(100)	1(100)	180(280)	185(27.6)
30대	58(27.9)	58(27.1)	45(225)	41(246)	76(49.0)	89(50.0)	16(22.9)	39(35.1)	7(70.0)		202(31.4)	227(33.8)
40대	45(21.6)	48(22.4)	69(345)	56(335)	37(23.9)	41(23.0)	23(32.9)	34(30.6)	2(20.0)		176(27.4)	179(26.7)
50대	9(4.3)	10(4.7)	38(19.0)	27(16.2)	5(3.2)	13(7.3)	5(7.1)	9(8.2)			57(8.9)	59(8.8)
60대이상	3(1.5)	1(0.5)	23(11.5)	19(11.3)	2(1.3)	1(0.6)					28(4.3)	21(3.1)
계	208(100)	211(100)	200(100)	167(100)	155(100)	178(100)	70(100)	111(100)	10(100)	1(100)	643(100)	671(100)

강간의 경우 20대가 가장 많아서 44.7%(93명)의 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30대가 27.9%(58명), 40대가 21.6% (45명)의 비율을 보인다. 강제추행은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 34.5%(69명)가 40대로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다음이 30대로서 22.5%(45명)의 비율이다. 50대는 19.0%(38명)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볼 때 강간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남성들이 많이 하고, 강제추행은 나이가 든 중년들이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성매수의 경우에는 30대가 49%(76명)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40대로서 23.9%(37명)의 비율을 보인다. 성매수알선은 20대가 37.1%(26명), 40대가 32.9%(23명), 30대가 22.9%(16명)이다. 이번 공개대상자에서는 20대와 4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음란물 제작은 30대가 7명이며, 40대가 2명이다.

3차 공개에서 강간의 경우 20대가 가장 많아서 45.3%의 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30대가 27.1%, 40대가 22.4%의 비율을 보였다. 강제추행은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 33.5%가 40대로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다음이 30대로서 24.6%의 비율이다. 성매수의 경우에는 30대가 50%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40대가 23%의 비율을 보였다. 성매수알선은 30대가 35.1%, 40대가 30.6%, 20대가 26.1%로서 성매수알선 역시 30대와 4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직업현황

직업	인원	
	제4차(%)	제3차(%)
생산직	114(17.7)	110(16.4)
서비스직, 판매직	86(13.4)	72(10.7)
자영업	146(22.7)	174(25.9)
농축어업	22(3.4)	18(2.7)
사무직, 관리직	80(12.4)	80(11.9)
전문직	20(3.1)	34(5.1)(군인1명포함)
학생	10(1.6)	16(2.4)
공익요원, 사병	12(1.9)	
무직	153(23.8)	167(24.9)
계	643(100)	671(100)

직업분포는 무직과 자영업의 비율이 각각 153명(23.8%)과 146명(22.7%)으로
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생산직(114명, 17.7%), 서비스직 판매직
(86명, 13.4%), 사무직(80명, 12.4%)의 비율이 10%이상이다.

3차 공개에서는 자영업과 무직의 비율이 각각 174명(25.9%)과 167명(24.9%)
으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생산직(16.4%), 사무직(11.9%)의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가해자의 거주지역 분포

지역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계	
	4차 (%)	3차 (%)										
서울	34(163)	27(126)	33(165)	29(17.4)	41(26.5)	54(30.3)	18(25.7)	8(7.2)	5(50.0)		131(20.4)	118(17.6)
부산	13(6.3)	11(5.1)	12(6.0)	18(10.8)	17(11.0)	33(18.6)	4(5.7)	9(8.1)	1(10.0)		47(7.3)	71(10.6)
대구	6(2.9)	8(3.7)	14(7.0)	5(2.9)	7(4.5)	8(4.5)	2(2.9)	2(1.8)			29(4.5)	23(3.4)
인천	7(3.4)	6(2.8)	13(6.5)	12(7.2)	17(11.0)	7(3.9)	1(1.4)		1(10.0)		39(6.1)	25(3.7)
광주	11(5.3)	16(7.5)	2(1.0)	6(3.6)	1(6)	3(1.7)		2(1.8)			14(2.2)	27(4)
대전	3(1.5)	20(9.4)	4(2.0)	2(1.2)	2(1.3)	3(1.7)	3(4.3)	10(9)			12(1.9)	35(5.2)
울산	8(3.8)	3(1.4)	4(2.0)	1(0.6)	5(3.2)	7(3.9)	1(1.4)	3(2.7)		1(100)	18(2.8)	15(2.2)
경기	34(163)	36(16.8)	30(15.0)	39(23.4)	28(18.1)	29(16.3)	7(10.0)	7(6.3)	3(30.0)		102(15.9)	111(16.5)
경북	12(5.8)	14(6.5)	15(7.5)	10(6)	7(4.5)	6(3.4)	6(8.6)	9(8.1)			40(6.2)	39(5.8)
경남	16(7.7)	12(5.6)	16(8.0)	9(5.4)	5(3.2)	6(3.4)	3(4.3)	7(6.3)			40(6.2)	34(5.1)
전북	10(4.8)	13(6.1)	2(1.0)	10(6)	6(3.9)	4(2.2)	7(10.0)	17(15.3)			25(3.9%)	44(6.6)
전남	24(11.5)	6(2.8)	17(8.5)	5(2.9)	5(3.2)	6(3.4)	7(10.0)	4(3.6)			53(8.2)	21(3.1)
충북	8(3.8)	7(3.3)	8(4.0)	4(2.4)	1(6)	2(1.1)	10(14.3)	31(28)			27(4.2)	44(6.6)
충남	7(3.4)	20(9.4)	10(5.0)	7(4.2)	8(5.2)	3(1.7)		2(1.8)			25(3.9)	32(4.8)
강원	8(3.8)	10(4.7)	7(3.5)	9(5.4)	3(1.9)	3(1.7)	1(1.4)				19(3.0)	22(3.3)
제주	5(2.4)	5(2.3)	10(5.0)	1(0.6)	2(1.3)	4(2.2)					17(2.6)	10(1.5)
미상	2(1.0)		3(1.5)								5(8)	
계	208(100)	211(100)	200(100)	167(100)	155(100)	178(100)	70(100)	111(100)	10(100)	1(100)	643(100)	671(100)

범죄자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 20.4%(131명), 경기 15.9%(102명)순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의 경우 경기 16.3%(3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동일하게 서울 16.3%(34명)이고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등은 서울이 가장 높아 각각 16.5%(33명), 26.5%(41명), 성매수알선 25.7%(18명)을 차지하였다.

<표 6> 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수

명수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계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1명	172(82.7)	183(85.5)	163(81.5)	121(72.5)	87(56.1)	100(56.2)	36(51.4)	53(47.7)	3(30.0)	1(100%)	461(71.7)	458(68.2)
2명	30(14.4)	25(11.6)	29(14.5)	34(20.3)	58(37.4)	60(38.7)	21(30.0)	26(23.4)	5(50.0)		143(22.2)	154(23.0)
3명	2(1.0)	4(1.9)	3(1.5)	11(6.6)	8(5.2)	7(3.9)	6(8.6)	17(15.4)			19(3.0)	39(5.8)
4명	3(1.4)	1(0.5)	3(1.5)		2(1.3)	1(0.6)	5(7.2)	6(5.4)	1(10.0)		14(2.2)	8(1.2)
5명	1(0.5)	1(0.5)	1(0.5)	1(0.6)		1(0.6)	1(1.4)	3(2.7)			3(4)	6(0.9)
6명								2(1.8)				2(0.3)
7명							1(1.4)	4(3.6)	1(10.0)		2(3)	4(0.6)
35명			1(5)								1(2)	
계	208(100)	214(100)	200(100)	167(100)	155(100)	178(100)	70(100)	111(100)	10(100)	1(100)	643(100)	671(100)

피해자의 수가 많은 범죄유형은 청소년 성매수와 성매수알선 임을 알 수 있다. 강간의 경우에 1명의 피해자만 있는 경우가 82.7%(172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2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14.4%(30명)이다. 강제추행도 강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1명의 피해자만 있는 경우가 81.5%(163명)로서 대부분이며 2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14.5%(29명)로 다음으로 많다. 그렇지만 강제추행에서는 35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도 1건이 발견되었다. 청소년성매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명만 있는 경우가 56.1%(87명)로 절반이 좀 넘으며, 2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37.4%(58명)로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성매수알선의 경우 1명의 피해자만 있는 경우가 51.4%(36명)인데 반해서 2명(21명, 30%), 3명(6명, 8.6%)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7명의 피해자에게 가해한 공개대상자도 1명이 있다. 이들은 미성년자들을 고용하여 성매수를 알선하거나 권유 혹은 강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음란물제작의 경우도 피해자의 수가 많아서 2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5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피해자의 수가 4명, 7명에 이르는 것도 각각 1건이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음란물제작, 성매수알선, 성매수, 강제추행, 강간의 순으로 피해자의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차 공개에서 피해자의 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성매수알선이었다. 1명의 피해자만 있는 경우가 47.7%인데 반해서 2명(23.4%), 3명(15.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7명까지의 피해자에게 가해한 공개대상자도 4명인 3.6%였다. 강간의 경우 1명의 피해자가 있는 비율이 85.5%, 강제추행은 72.5%, 청소년성매수는 56.2%이다. 청소년성매수의 경우 2명의 피해자가 있는 비율이 38.7%에 이르렀다. 전체적으로 성매수알선, 성매수, 강제추행, 강간의 순으로 피해자의 수가 많았다.

<표 7> 범죄유형별 범행횟수

횟수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계	
	제4차 (%)	제3차 (%)										
1회	120(57.7)	134(62.6)	111(55.5)	88(52.7)	17(11.0)	15(8.4)	19(27.2)	14(12.6)	1(10.0)		238(41.7)	251(37.4)
2회	42(20.2)	33(15.4)	37(18.5)	33(19.7)	41(26.5)	47(26.4)	7(10.0)	10(9.0)	2(20.0)	1(100)	129(20.1)	124(18.5)
3-5회	31(14.9)	37(17.3)	31(15.5)	30(18.0)	73(47.1)	90(50.6)	10(14.3)	14(12.6)	5(50.0)		150(23.3)	171(25.5)
6-10회	8(3.8)	6(2.8)	13(6.5)	9(5.4)	14(9.0)	21(11.8)	8(11.4)	18(16.2)	2(20.0)		45(7.0)	54(8.0)
11회이상	7(3.4)	4(1.9)	8(4.0)	7(4.2)	10(6.4)	5(2.8)	26(37.1)	55(49.6)			51(7.9)	71(10.6)
계	208(100)	214(100)	200(100)	167(100)	155(100)	178(100)	70(100)	111(100)	10(100)	1(100)	643(100)	671(100)

강간과 강제추행은 범행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청소년 성매수와 성매수알선은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범행횟수가 1회인 경우가 57.7%(120명), 55.5%(111명)의 비율을 보이고 2회가 20.2%(42명), 18.5%(37명), 3-5회가 14.9%(31명), 15.5%(31명)의 비율을 보여서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이 범행횟수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성매수의 경우에는 1회의 범행횟수만 있는 경우는 11.0%(17명)에 불과하고, 3-5회의 범행횟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서 47.1%(73명)를 차지하며, 2회인 경우는 26.5%(41명)에 이른다. 가장 범행횟수가 많은 범죄는 성매수알선이다. 1회의 범행만 있는 경우는 19명으로 27.2%에 불과하며 오히려 11회이상의 범행횟수를 보이는 것이 26명으로서 37.1%에 이르고 있다. 음란물제작은 3-5회가 5명으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회가 2명으로 나타났다.

3차 공개에서도 강간과 강제추행은 범행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성매수와 성매수알선은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범행횟수가 많은 범죄는 성매수알선이다. 1회의 범행만 있는 경우는 14명으로 12.6%에 불과하며 오히려 11회이상의 범행횟수를 보이는 것이 55명으로서 거의 절반이었다. 범행횟수가 많아질수록 비율이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표 8> 범죄유형별 범행장소

장소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계	
	제4차 (%)	제3차 (%)										
피해자의 집	67(32.2)	45(21.0)	52(26.0)	29(17.3)	2(1.3)	4(2.2)				1(100)	121(18.8)	78(11.6)
가해자의 집 또는 사무실	44(21.2)	71(33.2)	43(21.5)	53(31.7)	32(20.6)	36(20.2)	5(7.1)	7(6.3)	1(10)		125(19.4)	167(24.9)
숙박업소	16(7.7)	33(15.4)	7(3.5)	4(2.4)	101(65.2)	126(70.8)	13(18.6)	9(8.1)	5(5.0)		142(22.1)	173(25.8)
술집 등	2(1.0)			1(0.6)			31(44.3)	32(28.8)			33(5.1)	33(4.9)
다방	1(5)		1(5)	1(0.6)			14(20.0)	32(28.8)			16(2.5)	33(4.9)
안마시술소 유락업소 등							7(10.0)	31(28.0)			7(1.1)	31(4.6)
주택가 아파트 등	3(1.4)	3(1.4)	19(9.5)	16(9.6)	2(1.3)				4(40.0)		28(44)	19(2.9)
공원, 컴퓨터 등 한적한 곳	16(7.7)	11(5.2)	18(9.0)	13(7.8)		1(0.6)					34(5.3)	25(3.7)
길거리	5(2.4)	4(1.9)	23(11.5)	13(7.8)							28(44)	17(2.6)
학교 운동장 등	1(5)		4(2.0)	4(2.4)							5.8	4(0.6)
기타 실내	13(6.2)		11(5.5)	3(1.8)	5(3.2)	1(0.6)					29(45)	4(0.6)
범죄인의 차	37(17.8)	27(12.6)	14(7.0)	3(1.8)	12(7.8)	9(5.0)					63(9.8)	39(5.8)
화장실		2(0.9)	7(3.5)	3(1.8)	1(6)						8(1.2)	5(0.7)
기타	3(1.4)	18(8.4)	1(5)	24(14.4)		1(0.6)					4(6)	43(6.4)
계	208(100)	214(100)	200(100)	167(100)	155(100)	178(100)	70(100)	111(100)	10(100)	1(100)	643(100)	671(100)

범행장소는 전체적으로 범행장소로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숙박업소(142명, 22.1%)와 가해자의 집 또는 사무실(125명, 19.4%), 피해자의 집(121명, 18.8%)이다. 이러한 범행장소는 범죄유형별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집(67명, 32.2%)이 범행장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이 가해자의 집 또는 사무실(44명, 21.2%), 가해자의 자동차(37명, 17.8%)가 주로 강간의 범행장소로 사용되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집(52명, 26.0%), 가해자의 집 또는 사무실(43명, 21.5%), 길거리(23명, 11.5%)가 범행장소로 주로 사용되었다. 주택가 아파트 단지 등(19명, 9.5%), 공원등 한적한 장소(18명, 9.0%)도 범행장소로 사용된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성매수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숙박업소의 비율이 높다. 65.2%(101명)가 숙박업소를 이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해자의 집 또는 사무실을 이용한 경우가 20.6%(32명)로 높게 나타

났다. 성매수알선의 경우에는 술집, 주점, 나이트 등(31명, 44.3%), 다방(14명, 20%), 숙박업소(13명, 18.6%), 안마시술소, 윤락업소, 보도방 등(7명, 10%)에 집중되어 있다. 음란물제작은 숙박업소가 5명, 주택가 아파트 등이 4명으로 나누어졌다.

3차 공개에서는 전체적으로 범행장소로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숙박업소(25.8%)와 가해자의 집 또는 사무실(24.9%), 피해자의 집(11.6%)이다. 강간 경우에는 가해자의 집 또는 사무실(33.2%)이 범행장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이 피해자의 집(21%), 숙박업소(15.4%), 가해자의 자동차(12.6%)가 주로 강간의 범행장소로 사용되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집 또는 사무실(31.7%), 피해자의 집(17.3%)이 범행장소로 주로 사용되었고 이는 강간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주택가 아파트 단지 등(9.6%), 공원등 한적한 장소(7.8%), 길거리(7.8%)가 범행장소로 사용된 비율이 높아서 강간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매수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숙박업소의 비율이 높다. 70.8%가 숙박업소를 이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해자의 집 또는 사무실을 이용한 경우가 20.2%로 높게 나타났다. 성매수알선의 경우에는 술집, 주점, 나이트 등(28.8%), 다방(28.8%), 안마시술소, 윤락업소, 보도방 등(28.0%)에 집중되어 있고 그 밖에 가해자와 집 또는 사무실과 숙박업소가 각각 6.3%, 8.1%로 나타났다.

<표 9> 범죄유형별 범행시간

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계	
	제4차 (%)	제3차 (%)										
0시-6시	75(36.1)	87(41.2)	20(10.0)	27(16.6)	25(16.1)	43(25.4)	24(34.3)	28(30.8)			144(22.4)	185(29.1)
6시-12시	21(10.1)	32(15.2)	33(16.5)	20(12.3)	8(5.2)	12(7.1)		4(4.4)	2(2.0)		64(10.0)	68(10.7)
12시-18시	34(16.4)	27(12.8)	97(48.5)	75(46.0)	31(20.0)	39(23.1)	6(8.6)	8(8.8)	1(10.0)	1(10.0)	160(26.3)	150(23.6)
18시-24시	70(33.6)	65(30.8)	42(21.0)	41(25.2)	78(50.3)	75(44.4)	14(20.0)	51(56.0)	5(5.0)		209(32.5)	232(36.5)
미상	8(3.8)		8(4.0)		13(8.4)		26(37.1)		2(2.0)		57(8.8)	
계	208(100)	211(100)	200(100)	163(100)	155(100)	169(100)	70(100)	91(100)	10(100)	1(100)	643(100)	655(100)

범행시간은 주로 밤 시간대와 오후시간대에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차신상공개와는 약간 다른 분포를 보이는 것이다.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의 시간동안 32.5%(209명)가 이루어졌으며, 정오부터 저녁 6시까지 26.3%(169명)가 발생하였다. 심야시간대(자정부터 새벽 6시)에 발생한 것도 22.4%(144명)로 높게 나타났다. 즉 오전시간을 제외하고는 범행이 고르게 발생하였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의 경우 심야시간대(자정이후 6시까지)에 36.1% (75명)가 발생하였으며, 다음이 밤시간대(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에 33.6%(70명)가 발생하였다. 즉 전체 강간사건의 약70% 정도가 저녁 6시이후 밤과 심야시간대에 발생하였다.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정오이후 저녁 6시까지 48.5%(97명)가 발생하였으며 저녁 6시이후 밤시간대에 21.0%(42명)가 발생하였다. 성매수의 경우에는 밤시간대가 50.3%(78명)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오후시간(정오이후 저녁6시까지)과 심야시간대가 20.0%(31명)와 16.1%(25명)로 높게 나타났다. 성매수알선의 경우에는 심야시간대(24명, 34.3%)와 밤시간대(14명, 20.0%)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음란물제작은 저녁시간대(5명, 50.0%)가 가장 많고, 오전과 오후시간대가 각각 2명, 1명으로 나타났다.

3차 공개에서는 주로 밤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많이 발생했다.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의 시간동안 36.5%가 이루어졌으며, 자정이후의 새벽까지 29.1%가 발생하였다. 오후시간대에 발생한 것도 23.6%로 높게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의 경우는 심야시간대(자정이후 6시까지)에 41.2%가 발생하였으며, 다음이 밤시간대(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에 30.8%가 발생하였다.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정오이후 저녁 6시까지 46%가 발생하였으며 저녁 6시이후 밤시간대에 25.2%가 발생하였다. 성

매수의 경우에는 밤시간대가 44.4%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심야시간대와 오후시간(정오이후 저녁6시까지)이 25.4%와 23.1%로 높게 나타났다. 성매수 알선의 경우에는 밤시간대(56%)와 심야시간대(30.8%)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표 10> 범죄유형별 가해자-피해자 관계

범죄유형별 가피해자 관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계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제4 차 (%)	제3차- (%)	제4 차 (%)	제3 차 (%)	제4차 (%)	제3차 (%)
처음 본 사람	104(50.0)	128(59.8)	92(46.0)	75(44.9)	129(83.2)	156(87.6)	3(4.3)		7(70.0)	1(100)	335(52.1)	360(53.7)
과거 한두번 만난 사람	26(12.5)	19(8.9)	26(13.0)	14(8.4)	17(11.0)	13(7.3)			1(10.0)		70(10.9)	46(6.9)
알고 있는 사람의 친구, 후배, 애인	18(8.7)	5(2.3)	13(6.5)	1(0.6)	2(1.3)	1(0.6)					33(51)	7(1.0)
친구, 선후배 사이	4(1.9)	4(1.9)						1(0.9)			4(6)	5(0.7)
고용주와 종업원 관계	3(1.4)	4(1.9)	2(1.0)	1(0.6)			67(95.7)	109(98.2)			72(11.2)	114(17.0)
평소 잘 아는 사이	13(6.3)	10(4.7)	20(10.0)	25(15.0)	4(2.6)	3(1.7)		1(0.9)			37(58)	39(5.8)
잘 아는 동네 이웃	12(5.8)	9(4.2)	17(8.5)	26(15.6)	3(1.9)	5(2.8)					32(50)	40(6.0)
친인척	5(2.4)	5(2.3)	1(5)	3(1.8)							6(9)	8(1.2)
가족	20(9.6)	28(13.1)	28(14.0)	16(9.6)							48(7.5)	44(6.6)
기타	3(1.4)	2(0.9)	1(0.5)	6(3.6)					2(200)		6(9)	8(1.2)
계	208(100)	214(100)	200(100)	167(100)	155(100)	178(100)	70(100)	111(100)	10(100)	1(100)	643(100)	671(100)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범행 당시 처음 본 사람이 52.1%(335명)로서 가장 많고 그 밖에는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가 11.2%(72명), 과거 한두번 만난 사람이 10.9%(70명), 가족이 7.5%(48명), 평소 잘 아는 사이가 5.8%(37명)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범죄유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간의 경우에 처음 본 사람인 경우가 104명으로 50.0%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는 과거에 한두번 만난 사람이 12.5%(26명), 가족에 의해 강간의 피해를 당한 경우가 9.6%(20명),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친구, 후배, 애인이 8.7%(18명)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처음 본 사람의 비율이 46.0%(92명)로서 강간에

비해서 아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가족이 14.0%(28명), 과거 한두번 만난 사람이 13.0%(26명), 평소 잘아는 사이가 10.0%(20명)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볼 때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성매수의 경우에는 83.2%(129명)가 처음 본 사람이었으며, 그 밖에는 과거에 한두번 만난 사람이 11.0%(17명)로서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 한다. 추측컨대 과거에 한두번 만난 사람도 과거에 성매수 등에 의해서 알게 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성매수는 대부분 잘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매수알선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인 95.7%(67명)가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발생하였다. 즉 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음란물제작은 7명(70%)이 처음 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3차 공개에서는 전체적으로 범행당시 처음 본 사람이 53.7%로서 가장 많고 그 밖에는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가 17%, 과거 한두번 만난 사람이 6.9%, 가족이 6.6%, 잘 아는 동네이웃이 6%, 평소 잘 아는 사이가 5.8%의 비율을 보였다. 강간의 경우에 처음 본 사람인 경우가 128명으로 59.8%를 보였다. 그 밖에는 가족에 의해서 강간의 피해를 당한 경우가 13.1%로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과거에 한두번 만난 사람이 8.9%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처음 본 사람의 비율이 44.9%로서 강간에 비해서 아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평소 잘아는 사이가 15%, 잘 아는 동네이웃이 15.6%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에 한두번 만난 사람도 8.4%의 비율을 보였다. 청소년성매수의 경우에는 87.6%가 처음 본 사람이었으며, 그 밖에는 과거에 한두번 만난 사람이 7.3%이다. 성매수알선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인 98.2%가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발생하였다.

<표 11> 범죄유형별 미성년자 인지 여부

미성년자 인지여부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계	
	제4차 (%)	제3차 (%)										
알고 있음	148(71.1)	142(66.4)	188(94.0)	159(95.2)	139(89.6)	159(89.3)	56(80.0)	93(83.8)	9(90.0)	1(100)	540(84.0)	554(82.6)
알지 못함	3(1.5)	10(4.7)	1(5)	3(1.8)	8(5.2)	15(8.4)	1(1.4)	15(13.5)	1(10.0)		14(22)	43(64)
미상	57(27.4)	62(29.0)	11(5.5)	5(3.0)	8(5.2)	4(2.2)	13(18.6)	3(2.7)			89(13.8)	74(11.0)
계	208(100)	214(100)	200(100)	167(100)	155(100)	178(100)	70(100)	111(100)	10(100)	1(100)	643(100)	671(100)

범행당시 미성년자 인지여부의 분포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비율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강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것이 3

명으로 1.5%이고, 강제추행의 경우는 단 1명인 0.5%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성매수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비율이 5.2%(8명)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높다. 성매수알선의 경우는 1.4%(1명)만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음란물 제작도 1명(10.0%)만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3차 공개에서 강간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비율이 66.4%이며, 반면 인지여부를 수사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29%로서 가장 높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95.2%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성매수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비율이 8.4%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높다. 성매수알선의 경우는 83.8%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였고, 13.5%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12> 범죄유형별 처벌에 대한 인지 정도

처벌 인지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계	
	제4차 (%)	제3차 (%)										
알고 있음	62(29)	111(51.9)	71(35)	83(47)	106(84)	126(70)	47(67.1)	85(76)	7(70)	1(100)	29(45)	406(605)
알지 못함		1(0.5)	3(15)	5(30)		3(17)					3(4)	9(13)
미상	146(70.2)	102(47.7)	126(63)	79(47.3)	49(31.6)	49(27.5)	23(32)	26(34)	3(30)		347(54)	236(382)
계	208(100)	214(100)	200(100)	167(100)	155(100)	178(100)	70(100)	111(100)	10(100)	1(100)	643(100)	671(100)

거의 모두가 자신이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받을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 것은 강제추행에서 3명(1.5%)이 있었을 뿐 다른 범죄유형에서는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한 명도 없었다.

3차 공개에서는 강간과 강제추행, 청소년 성매수에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경우는 각각 0.5%, 3%, 1.7%로서 극히 낮은 비율을 보이며, 성매수 알선은 한 명도 없다.

<표 13> 범죄유형별 유인방법

유인방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계	
	제4차 (%)	제3차 (%)										
인터넷 채팅	25(12.1)	15(7.0)	1(5)		87(56.1)	76(42.7)	5(7.2)		3(30.0)	1(100)	121(18.8)	92(13.7)
전화방 또는 전화이용	3(1.4)	1(0.5)		1(0.6)	21(13.5)	48(27.0)					24(3.7)	51(7.6)
다른 사람의 소개	6(2.9)	3(1.4)	1(5)		6(3.9)	14(7.9)			4(40.0)		17(2.6)	17(2.5)
음주, 수면상태 이용	20(9.6)	15(7.0)	14(7.0)	19(11.4)							34(5.3)	34(5.1)
고용관계 이용	22(10.6)	5(2.3)	23(11.5)				64(91.4)	109(98.2)			109(17.0)	114(17.0)
납치 또는 강압, 흉기위협	51(24.5)	71(33.2)	47(23.5)	67(40.1)							98(15.3)	138(20.6)
길거리 유인	13(6.3)	21(9.8)	48(24)	31(18.6)	10(6.5)	5(2.8)			1(10)		72(11.2)	57(8.5)
배달, 티켓, 출장안마 등	8(3.8)	25(11.7)	4(2.0)		10(6.5)	10(5.6)					22(3.4)	35(5.2)
주거침입	35(16.8)	34(15.9)	13(6.5)	13(7.8)		1(0.6)					48(7.5)	48(7.2)
숙식제공	4(1.9)	5(2.3)	4(2.0)	2(1.2)	5(3.2)	7(3.9)					13(2.0)	14(2.1)
금품유혹	5(2.4)	4(1.9)	13(6.5)	15(9.0)	10(6.5)	15(8.4)	1(1.4)	1(0.9)			29(4.5)	35(5.2)
차량유인	3(1.4)	9(4.2)	9(4.5)	1(0.6)	1(6)						13(2.0)	10(1.5)
미상	13(6.3)	6(2.8)	23(11.5)	18(10.8)	5(3.2)	2(1.1)			2(20)		43(6.7)	26(3.9)
계	208(100)	214(100)	200(100)	167(100)	155(100)	178(100)	70(100)	111(100)	10(100)	1(100)	643(100)	67(100)

피해청소년을 유인한 방법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인터넷 채팅(121명, 18.8%), 고용관계이용(109명, 17%), 납치 또는 강압, 흉기위협(98명, 15.2%), 길거리 유인(72명, 11.2%)의 순서를 보인다. 범죄유형별로 유인방법을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납치 또는 강압, 흉기위협 등 강제력을 사용한 경우가 24.5%(5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주거침입이 16.8%(35명), 고용관계이용이 10.6%(22명), 음주, 수면상태 이용이 9.6%(20명)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길거리 유인이 24%(48명)로 가장 높고, 납치 또는 강압, 흉기위협 등 강제력을 사용한 경우가 23.5%(47명)의 비율을 보인다. 그밖에 고용관계를 이용한 경우가 11.5%(23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청소년성매수의 경우에는 인터넷 채팅이 56.1%(87명)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전화방 또는 전

화방 또는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13.5%(21명)이다. 따라서 청소년성매수의 경우는 대부분 인터넷 채팅이나 전화방 등을 매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길거리 유인(10명, 6.5%), 차배달이나 티켓, 출장안마 등(10명, 6.5%), 금품유혹(10명, 6.5%)을 통해서 성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성매수알선의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이용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91.4%(64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채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도 5명으로 7.2%의 비율을 보였다. 음란물제작은 다른 사람의 소개로 이루어진 경우가 4명(40%), 인터넷 채팅으로 이루어진 경우 3명(30%), 미상(2명, 20%) 및 길거리 유인(1명, 10%) 등이다.

3차 공개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납치 또는 강압, 흉기위협으로 20.6%의 비율을 보였다. 다음은 고용관계이용으로 17%, 인터넷채팅을 통한 경우가 13.7%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범죄유형별로 유인방법을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납치 또는 강압, 흉기위협 등 강제력을 사용한 경우가 3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주거침입이 15.9%, 배달, 티켓, 출장안마 등이 11.7%, 길거리유인이 9.8%, 인터넷 채팅과 음주, 수면상태 이용이 7%의 비율을 보였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납치 또는 강압, 흉기위협 등 강제력을 사용한 경우가 40.1%로 가장 높으며 길거리 유인이 18.6%이며, 음주 수면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경우가 11.4%, 금품유혹이 9%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청소년성매수의 경우에는 인터넷 채팅이 42.7%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전화방 또는 전화방 또는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27%였다. 또한 금품유혹(8.4%), 차배달이나 티켓, 출장안마 등(5.6%)을 통해서 성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성매수알선의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이용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98.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14> 범죄유형별 피해자의 태도(엄벌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 태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계 (%)
엄벌	172(82.7)	162(81.0)	23(14.8)	32(45.7)	1(10.0)	390(60.7)
선처	16(7.7)	21(10.5)	5(3.2)	2(2.9)		44(6.8)
미상	20(9.6)	17(8.5)	127(82.0)	36(51.4)	9(90.0)	209(32.5)
계	208(100)	200(100)	155(100)	70(100)	10(100)	643(100)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의 분포는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것이 가장 많아서 60.7%(390명)이고, 선처를 바라는 경우는 6.8%+(44명)에 불과했다. 범죄유형별로 차이가 많은데, 강간과 강제추행은 엄벌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아서 각각 82.7%(172명), 81.0%(162명)이다. 성매수와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은 피해자의 태도가 미상인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82.0%, 51.4%, 90.0%에 이르고 있다. 나머지의 경우도 선처보다는 엄벌을 요구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2. 범죄유형별 사건의 특성

(1) 강간 및 강제추행

<표 15> 강간과 강제추행에서 집단 성폭행 여부

집단폭행여부	강간		강제추행		계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집단성폭행아님	181(87.0)	155(73.1)	199(99.5)	166(99.4)	380(93.1)	321(84.7)
집단성폭행	27(13.0)	57(26.9)	1(.5)	1(0.6)	28(6.9)	58(15.3)
계	208(100)	212(100)	200(100)	167(100)	408(100)	379(100)

강간과 강제추행에서 6.9%인 28건이 집단 성폭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집단성폭행이 단 1명이었으며, 강간의 경우에는 27명인 13.0%가 집단적으로 성폭행하였다.

3차 공개에서는 15.3%인 58명이 집단 성폭행이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집단성폭행이 단 1명이었으며, 강간의 경우에는 57명인 26.9%가 집단적으로 성폭행하였다.

<표 16> 강간과 강제추행에 있어서 범행동기

범행동기	강간(%)	강제추행(%)	계(%)
단순한 성적욕구	189(90.9)	182(91.0)	371(90.9)
타범행 신고방지	2(1.0)		2(.5)
보복 혹은 분풀이	4(1.9)	2(1.0)	6(1.5)
호기심		6(3.0)	6(1.5)
금전적 이득	8(3.8)	1(.5)	9(2.2)
기타	5(2.4)	9(4.5)	14(3.4)
계	208(100.0)	200(100.0)	408(100.0)

범행동기는 강간에 있어서 단순한 성적욕구가 90.9%(189명)로서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이러한 분포는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여서 91.0%(182명)가 단순한 성적인 욕구에 의해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강간과 강제추행에 있어서 범행의 계획성

범행의 계획성	강간		강제추행		계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제4차 (%)	제3차 (%)
우발적	100(48.1)	101(47.6)	138(69.0)	133(79.6)	238(58.3)	234(61.7)
계획적	108(51.9)	111(52.4)	62(31.0)	34(20.4)	170(41.7)	145(38.3)
계	208(100)	212(100)	200(100)	167(100)	408(100)	379(100)

전체적으로 41.7%(170명)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비율은 강제추행보다는 강간이 더 높다. 강간의 경우에는 51.9%(108명)인 절반 이상의 강간사건이 사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반면 강제추행은 31.0%(62명)만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강제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3차 공개에서 전체적으로 38.3%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강간의 경우에는 52.4%가 사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반면 강제추행은 20.4%만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표 18> 강제추행 피해의 보고대상

피해 보고대상	인원(%)	비고
알리지 않음	31(15.5)	
부모에게 알림	111(55.5)	
친구에게 알림	6(3.0)	
친인척에게 알림	10(5.0)	
선생님께 알림	7(3.5)	
경찰에 알림	10(5.0)	
기타	25(12.5)	
계	200(100)	

피해청소년이 강제추행을 당한 후에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린 경우가 가장 많아서 55.5%(111명)의 피해청소년이 자신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이야기하였다. 경찰에 알린 경우는 5.0%(10명)로서 나타났으며,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경우도 12.5%(25명)로 나타났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도 15.5%(31명)이었다.

(2) 청소년 성매수

<표 19> 한 사건에서 가해자의 성매수 횟수

성매수 횟수	인원(%)	비고
1회	31(20.0)	
2회	25(16.1)	
3-5회	76(49.0)	
6-10회	13(8.4)	
11회이상	10(6.5)	
계	155(100)	

성매수를 하면서 한 사건에서 성매수한 횟수 20.0%(31명), 2회 성매수한 경우가 16.1%(25명), 3회에서 5회 성매수한 경우가 거의 절반인 49.0%(76명)에 달했다. 6회에서 10회까지 성매수한 사람도 8.4%(13명)이고, 11회이상 성매수한 경우도 10명인 6.5%나 있었다.

<표 20> 성교 형태

성교 형태	인원(%)	비고
1:1성교	123(79.3)	
남성 2명이상 여성 1명	1(0.7)	
남성 1명 여성 2명이상	29(18.7)	
남녀 모두 2명이상	2(1.3)	
계	155(100)	

성교의 형태는 1:1로 성교가 이루어진 경우가 79.3%(123명)이었다. 남성 2명이상 여성 1명이 0.7%(1명),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상이 관계를 가진 경우도 18.7%(29명)에 이른다. 남녀모두 2명이상이 관계를 가진 경우도 2명(1.3%)이다.

<표 21> 피해자가 성매수 이유

성매수 이유(피해자)	인원		비고
	제4차 (%)	제3차 (%)	
용돈이나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	110(71.0)	93(52.2)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6(3.9)	5(2.8)	
사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5(3.2)	37(20.8)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12(7.7)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11(7.1)	23(12.9)	
남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7(4.5)		
기타	4(2.6)	20(11.2)	
계	155(100)	178(100)	

청소년이 성매수에 가담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71.0%(110명)의 청소년들이 용돈이나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라고 하였으며, 다음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12명, 7.7%),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11명, 7.1%)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볼 때 피해청소년들이 성매수 하는 것은 유흥과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가출 후에 숙식해결을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매수 한 남성들뿐만 아니라 피해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차 공개에서는 52.2%의 청소년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하였으며, 다음이 사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20.8%),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12.9%)라고 진술하였다.

<표 22> 가해자가 성매수 이유

성매수 이유(가해자)	인원		비고
	제4차 (%)	제3차 (%)	
호기심	32(20.6)	16(9.0)	
성욕	114(73.6)	155(87.1)	
피해자의 유혹	8(5.2)	3(1.7)	
기타	1(1.6)	4(2.2)	
계	155(100)	178(100)	

청소년을 성매수한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은 성욕 때문에 성매수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73.6%(114명)이다. 다음으로는 호기심으로 성매수하게 되었다는 것이 20.6%(32명)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볼 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호기심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차 공개에서도 성욕 때문에 성매수한 것이 87.1%이며, 호기심으로 성매수하게 되었다는 것이 9%의 비율이다.

<표 23> 가학적·변태적 방법의 요구 여부

가학적·변태적 방법의 요구	인원(%)	비고
요구함	33(21.3)	
요구하지 않음	122(78.7)	
계	155(100)	

성매수시 범죄자가 청소년에게 가학적·변태적 방법을 요구한 경우가 21.3%로서 33명에 이르렀다.

(3) 성매수알선

<표 24> 알선업소의 종류

알선업소 종류	인원		비고
	제4차 (%)	제3차 (%)	
다방	19(27.1)	37(33.3)	
유홍주점, 단란주점	32(45.7)	42(37.9)	
윤락업소	6(8.6)	12(10.8)	
보도방	5(7.1)	14(12.6)	
숙박업소	2(2.9)	2(1.8)	
기타	6(8.6)	4(3.6)	
계	70(100)	111(100)	

성매수알선 업소의 종류에는 유홍주점, 단란주점이 45.7%(32명)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다방으로서 27.1%(19명)이다. 이는 주로 티켓다방에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윤락업소가 8.6%(6명), 보도방이 7.1%(5명)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이 숙박업소에 고용되어 성매수를 한 것은 2.9%에 불과하다.

3차 공개에서는 유홍주점, 단란주점이 37.9%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다방으로서 33.3%이다. 보도방이 12.6%, 윤락업소가 10.8%의 비율을 보였으며, 숙박업소에 고용되어 성매수를 한 것은 1.8%였다.

<표 25> 고용 청소년의 수

고용 청소년의 수	인원		비고
	제4차(%)	제3차(%)	
1-2명	52(74.3)	61(55.0)	
3-4명	15(21.4)	30(27.0)	
5-6명	2(2.9)	11(9.9)	
7명 이상	1(1.4)	9(8.1)	
계	70(100)	111(100)	

각 업소에 청소년을 1-2명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한 경우가 74.3%(52명)이고 3-4명을 고용하였다는 경우가 21.4%(15명)이다. 5-6명은 2.9%(2명)이며, 7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는 1명이다.

3차 공개에서는 1-2명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한 경우가 55%이고 3-4명을 고용하였다는 경우가 27.0%이다. 5-6명은 9.9%였으며, 7명 이상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한 경우도 8.1%이었다.

<표 26> 윤락강요 여부

윤락강요 여부	인원		비고
	제4차 (%)	제3차 (%)	
권유나 강요 없음	5(7.2)	29(26.1)	
윤락행위 권리	36(51.4)	32(28.9)	
윤락행위 강요	25(35.7)	50(45.0)	
윤락강요 및 폭력사용	4(5.7)		
계	70(100)	111(100)	

성매수알선업자가 여자청소년들에게 윤락행위를 권리나 강요하지 않은 경우가 7.2%(5명)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단지 권리만 하였다고 한 것이 51.4%(36명)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윤락행위를 강제로 강요하였다고 한 경우가 35.7%(25명)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윤락행위의 권리나 강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차 공개에서는 권유나 강요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이 26.1%인 반면에 단지 권유만 하였다고 한 것은 28.9%이고, 윤락행위를 강제로 강요하였다고 한 경우가 45%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3. 피해청소년의 특성

<표 27> 피해청소년의 성별

성별	인원(%)	비고
남	20(1.8)	
여	1067(98.2)	
합계	1087(100)	

전체피해청소년의 수는 총 1087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3차 대상자 보다 한 명이 적은 숫자이다. 성별은 남자가 20명으로 1.8%이고, 나머지는 모두 여자로서 1067명(98.2%)이다. 이러한 성별비율은 3차 신상공개와 유사하다. 3 차 신상공개에서 피해청소년의 수는 총 1088명이며, 남자가 18명으로 1.7%이고, 나머지는 모두 여자로서 98.3%이다.

<표 28> 범죄피해 유형별 피해자의 연령

연령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계(%)
3세	1(.4)	4(1.4)				5(.5)
4세		10(3.6)				10(.9)
5세	2(.8)	20(7.2)				22(2.0)
6세		26(9.4)				26(2.4)
7세	3(1.2)	29(10.5)				32(2.9)
8세	1(.4)	22(7.9)				23(2.1)
9세	4(1.6)	24(8.7)				28(2.6)
10세	2(.8)	32(11.6)	1(.2)			35(3.2)
11세	10(4.1)	30(10.8)	2(.4)			42(3.9)
12세	19(7.8)	23(8.3)	8(1.6)			50(4.6)
소계	42(17.2)	220(79.4)	11(2.3)			273(25.1)
13세	23(9.4)	11(4.0)	26(5.4)		1(25.0)	61(5.6)
14세	37(15.2)	7(2.5)	92(19.0)	5(6.5)		141(13.0)
15세	33(13.5)	15(5.4)	100(20.6)	17(22.1)	1(25.0)	166(15.3)
소계	93(38.1)	33(11.9)	218(44.9)	22(28.6)	2(50.0)	368(33.9)
16세	41(16.8)	11(4.0)	132(27.2)	17(22.1)	1(25.0)	202(18.6)
17세	42(17.2)	10(3.6)	96(19.8)	19(24.7)		167(15.4)
18세	26(10.7)	3(1.1)	28(5.8)	19(24.7)	1(25.0)	77(7.1)
소계	109(44.7)	24(8.7)	256(52.8)	55(71.4)	2(50.0)	446(41.0)
계	244(100)	277(100)	485(100)	77(100)	4(100)	1087(100)

여기에서는 피해자들의 첫 번째 가해자의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하였다. 먼저 강간의 경우 피해청소년의 연령은 17세인 경우가 17.2%(42명), 다음으로 16세(41명, 16.8%), 14세(37명, 15.2%), 15세(33명, 13.5%), 18세(26명, 10.7%)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10%이상의 비율을 보여 강간의 피해는 주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강간의 경우에는 3세가 1명, 5세가 1명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연령별로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연령은 10세로서 11.6%(32명)이며, 그밖에 11세가 10.8%(30명), 7세가 10.5%(29명)로서 10%이상의 비율을 보인다. 3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연령에서 피해자의 분포가 나타나

고 있으며 그 비율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강간의 피해와 비교할 때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들의 연령대가 많이 낮음을 볼 수 있다. 주로 10세와 11세 아래의 아동들이 주된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3세에서 5세까지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수도 적지 않다. 다음으로 청소년 성매수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연령은 16세로서 27.2%(132명)의 비율을 보이고, 그밖에 15세(100명, 20.6%), 17세(96명, 19.8%), 14세(92명, 19%)가 10%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볼 때 청소년 성매수는 만14세부터 만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주로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매수 알선의 경우 대부분 15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피해 대상이 되었다. 15세와 16세가 각각 17명으로서 22.1%의 비율을 보였고, 17세와 18세가 각각 19명으로서 24.7%의 비율을 보였다. 14세로서 성매수 알선의 피해를 당한 청소년도 5명(6.5%)이었다. 음란물 제작은 4명의 청소년이 피해를 당했는데, 각각 13세, 15세, 16세, 18세에 1명의 피해자가 있었다.

<표 29> 피해청소년의 연령별(3차와 4차 비교)

피해청소년 연령	인원		비고
	제4차 (%)	제3차 (%)	
3 세	5(4)	7(6)	
4 세	10(.9)	12(1.1)	
5 세	22(2.0)	26(2.4)	
6 세	26(2.4)	35(3.2)	
7 세	32(2.9)	28(2.6)	
8 세	23(2.1)	28(2.6)	
9 세	28(2.6)	27(2.5)	
10 세	35(3.2)	37(3.4)	
11 세	42(3.9)	34(3.1)	
12 세	50(4.6)	38(3.5)	
소 계	273(25.1)	272(25)	
13 세	61(5.6)	57(5.2)	
14 세	141(13.0)	104(9.6)	
15 세	166(15.3)	166(15.3)	
소 계	368(33.9)	327(30.1)	
16 세	202(18.6)	201(18.5)	
17 세	167(15.4)	208(19.1)	
18 세	77(7.1)	80(7.3)	
소 계	446(41.0)	489(44.9)	
합 계	1087(100)	1088(100)	

피해청소년의 연령은 주로 만 14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들이 피해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세가 18.6%(202명), 17세가 15.4%(167명), 15세가 15.3%(166명), 14세가 13%(141명)로서 10%이상의 비율을 보였고 그밖에 18세와 13세도 각각 7.1%(77명), 5.6%(61명)의 비율을 보인다. 한편 10세이하의 어린이들도 피해의 대상이 된 경우도 적지 않고 3세나 4세의 경우도 15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3차 공개에 비해서 피해청소년의 연령이 약간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차 공개에서 피해청소년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7세가 19.1%, 16세가 18.5%, 15세가 15.3%로서 10%이상의 비율을 보였고, 그밖에 14세와 18세도 각각 9.6%, 7.3%의 비율을 보였다.

<표 30> 범죄피해 유형별 피해자의 직업분포

직업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계
학생	166(68.0)	212(76.5)	222(45.8)	9(11.7)	2(50.0)	611(56.2)
다방종업원	15(6.2)	2(7)	17(3.5)	22(28.6)		56(5.2)
유흥업소 종업원	1(4)		2(4)	33(42.8)		36(3.3)
편의점 아르바이트			1(2)			1(1)
무직	51(20.9)	57(20.6)	229(47.2)	11(14.3)	2(50.0)	350(32.2)
기타	11(4.5)	6(2.2)	14(2.9)	2(2.6)		33(3.0)
계	244(100)	277(100)	485(100)	77(100)	4(100)	1087(100)

피해자의 직업은 강간의 경우에 68%인 166명의 청소년이 학생이었으며, 무직이 20.9%(51명)의 비율을 보였다. 다방종업원도 15명으로 6.2%의 비율을 보였다. 강제추행의 경우 76.5%인 212명이 학생이었으며, 무직이 57명으로 20.6%의 비율을 보였다. 강간과 강제추행에서의 무직에는 취학전의 아동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성매수의 경우에는 학생보다 무직의 비율이 더 높아서 무직이 47.2%(229명)이며, 학생이 45.8%(222명)의 비율을 보였다. 성매수알선의 경우에는 유흥업소의 종업원이 경우가 가장 많아서 42.8%(33명)에 이르며, 다방종업원이 28.6%(22명)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서 성매수알선의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14.3%(11명), 학생이면서 성매수알선의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11.7%(9명)이었다. 음란물제작의 경우에는 학생이 2명, 무직이 2명으로 나타났다.

<표 31> 피해 청소년의 직업별 현황(3차와 4차 비교)

직업별	인원		비고
	제4차(%)	제3차(%)	
미취 학아동	47(4.3)	59(5.4)	
학생	611(56.2)	571(52.5)	
다방종업원	56(5.2)	90(8.3)	
유흥업소 종업원	36(3.3)	51(4.7)	
아르바이트	1(.1)	6(.6)	
무직	303(27.9)	245(22.5)	
기타	33(3.0)	66(6.1)	
합계	1087(100)	1088(100)	

피해청소년의 범행 당시 직업은 학생인 경우가 가장 많아서 611명인 56.2%의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하고 무직인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 303명으로 27.9%였다. 다방이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5.2%(56명)와 3.3%(36명)의 비율을 보였다.

<표 32> 범죄피해 유형별 피해자의 가출여부

가출여부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계(%)
가출	26(10.8)	8(2.9)	144(29.7)	19(24.7)	1(25.0)	198(18.2)
가출아님	150(61.5)	247(89.2)	207(42.7)	10(13.0)	1(25.0)	615(56.6)
미상	68(27.9)	22(7.9)	134(27.6)	48(62.3)	2(50.0)	274(25.2)
계	244(100)	277(100)	485(100)	77(100)	4(100)	1087(100)

피해자의 가출여부는 가출의 비율과 수사기록에서 가출여부를 알 수 없는 비율(미상)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강간은 피해청소년이 가출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가 26명으로서 10.6%의 비율을 보이고, 미상은 27.9%(68명)였다. 강제추행은 피해청소년이 가출한 경우가 2.9%(8명)이며, 미상인 비율도 7.9%(22명)이다. 대부분의 피해청소년은 가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청소년 성매수의 경우, 가출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29.7%(144명)이며, 미상도 27.6%(134명)에 이른다. 성매수알선의 경우는 미상의 비율이 매우 높

아서 62.3%(48명)에 이르고 있다. 나머지 가출여부가 확인된 경우, 가출한 경우가 24.7%(19명), 가출하지 않은 경우가 13%(10명)로, 가출한 청소년이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음란물 제작의 경우에는 가출이 1명, 가출하지 않은 경우가 1명, 미상이 2명으로 나타났다.

<표 33> 피해 청소년의 범행당시 가출여부

가출여부	인원		비고
	제4차 (%)	제3차 (%)	
가출중	198(18.2)	186(17.1)	
가출아님	615(56.6)	565(51.9)	
미상	274(25.2)	337(31.0)	
합계	1087(100)	1088(100)	

피해청소년이 범행당시, 가출중인 경우가 198명으로 18.2%였고, 가출이 아닌 상태가 56.6%로서 615명이었다. 274명(25.2%)은 수사자료에서 가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3차 신상공개와 비슷한 결과로, 3차 신상공시에서는 가출중인 경우가 186명으로 17.1%였고, 가출이 아닌 상태가 51.9%로서 565명이었다. 337명은 가출여부가 미상이었다.

<표 34> 피해 청소년의 동거현황

동거인	인원		비고
	제4차 (%)	제3차 (%)	
부모	350(32.2)	441(40.5)	
부	79(7.3)	72(6.6)	
모	95(8.7)	100(9.2)	
조부모, 친척	60(5.5)	45(4.1)	
친구, 기타	49(4.5)	84(7.7)	
미상	454(41.8)	346(31.8)	
계	1087(100)	1088(100)	

피해청소년들이 범행당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350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편부, 편모, 조부모 등과 사는 경우도 각각 7.3%(79명), 8.7%(95명), 5.5%(60명)로 나타났다. 그밖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도 49명으로 4.5%이다. 454명(41.8%)은 수사자료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3차 공개에서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441명 40.5%로 가장 많았고, 편부, 편모, 조부모 등과 사는 경우도 6.6%, 9.2%, 4.1%로 나타났다. 그밖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도 84명으로 7.7%에 이르렀다. 346명(31.8%)은 수사자료에서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35> 범죄피해 유형별 피해자의 전체피해건수 분포

피해건수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계(%)
없음			1(2)			1(1)
1회	157(64.3)	200(72.2)	234(48.2)	15(19.5)		606(55.7)
2회	33(13.5)	30(10.8)	116(23.9)	9(11.7)	3(75.0)	191(17.6)
3-5회	40(16.4)	25(9.0)	86(17.7)	14(18.2)	1(25.0)	166(15.3)
6-10회	7(2.9)	14(5.1)	31(6.4)	12(15.6)		64(5.9)
11-20회	2(0.8)	6(2.2)	9(1.9)	6(7.8)		23(2.1)
21회 이상	5(2.1)	2(0.7)	8(1.7)	21(27.2)		36(3.3)
계	244(100)	277(100)	485(100)	77(100)	4(100)	1087(100)

범죄피해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전체피해건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에 전체 피해건수가 1회인 경우가 가장 많아서 64.3%(157명)이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은 보이는 것은 3-5회로서 16.4%(40명)이고,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2회의 피해를 당한 경우로서 13.5%(33명)이다. 21회이상 피해를 당한 경우도 5명에 이르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72.2%(200명)가 한번의 피해를 당했으며, 10.8%(30명)가 두 번의 피해를 당하였다. 3번에서 5번의 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25명으로서 9%의 비율을 보였다. 청소년성매수의 경우에는 1회의 피해만을 당한 경우는 48.2%(234명)로서 앞의 범죄피해 유형에 비해서 한번만 피해를 당한 비율이 상당히 낮다. 2회의 피해를 당한 경우가 23.9%(116명)에 이르며, 3회에서 5회의 피해를 당한 경우도 17.7%(86명)에 이른다. 10회이상의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수도 적지 않다. 성매수알선의 경우가 반복되는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것을 위의 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매수알선에서 단 1회의 피해만을 당한 경우는 19.5%(15명)에 불과하고, 오히려 21회이상 피해를 당했다고 한 경우가 27.2%(21명)로서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성매수알선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피해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음란물 제작의 경우에는 3명이 2회의 피해를 당했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3회에서 5회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 2003-33

제5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고서

발행인 이승희

발행처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편 집 청소년보호위원회 선도보호과

전 화 (02) 735-2667

발행일 2003. 12.

인쇄

ISBN 89-8473-189-7